
법원 공보

2016년 12월 15일 목요일

제 1510 호

법원행정처



목 차

규 칙	1609	소액사건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
	1611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1613	소년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
	16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625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163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내 규	1633	법관 및 법원공무원 국내위탁교육훈련 내규 일부개정내규
예 규	1639	청사유지관리지침 전부개정예규
	1654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657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
	1661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신법령 목록	1664	
인 사	1669	
공 고	1675	
공지사항	1676	

● 규 칙

◎ 소액사건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694호 2016. 11. 29. 공포)

소액사건심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조제1항에 따른”으로, “2,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건으로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1·2. (생략)

개 정 안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 3,000만원-----

-----.

1·2. (현행과 같음)

◎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695호 2016. 11. 29. 공포)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에 정한 전자소송홈페이지를 통해 증명서를 자동 발급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1월 2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4조(수수료)

- ① 재판기록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또는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 집행문 부여를 신청할 경우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신설>

1. ~ 4. (생략)

② ~ ⑤ (생략)

개 정 안

제4조(수수료)

- ① -----

-----, 다만,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에 정한 전자소송홈페이지를 통해 증명서를 자동 발급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소년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696호 2016. 11. 29. 공포)

소년심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년 보호사건”을 “소년 보호사건 및 형사사건”으로 한다.

제2조 앞에 장 번호 및 장 제목, 절 번호 및 절 제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보호사건

제1절 통칙

제11조 앞의 “제2장”을 “제2절”로 하고, 제31조 앞의 “제3장”을 “제3절”로 하며, 제44조 앞의 “제4장”을 “제4절”로 하고, 제54조 앞의 “제5장”을 “제5절”로 한다.

제3장(제55조부터 제5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형사사건

제55조(공판기일 지정) 재판장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면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최대한 빨리 제1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56조(조사의 위촉)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위촉할 수 있다.

1. 소년의 심신상태,品行,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2. 소년과 보호자의 관계, 보호자의 소년에 대한 보호감독상황 및 향후 보호능력
3. 피해자에 대한 관계 및 재범의 위험성과 정도
4. 그 밖에 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형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9조를 삭제한다.

②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3조)을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u>소년 보호사건</u> 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u>〈신 설〉</u>	제1조(목적) ----- -- <u>소년 보호사건 및 형사사건</u> ----- ----- <u>제2장 보호사건</u> <u>제1절 통칙</u>
제2조(결정서) ①·② (생 략) <u>제2장 조사와 심리</u> (생 략) <u>제3장 보호처분</u> (생 략) <u>제4장 항고</u> (생 략) <u>제5장 과태료</u> (생 략) <u>〈신 설〉</u> <u>〈신 설〉</u>	제2조(결정서) ①·② (현행과 같음) <u>제2절</u> ----- (현행과 같음) <u>제3절</u> ----- (현행과 같음) <u>제4절</u> ----- (현행과 같음) <u>제5절</u> ----- (현행과 같음) <u>제3장 형사사건</u> <u>제55조(공판기일 지정)</u> <u>재판장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면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최대한 빨리 제1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u>

현 행

〈신 설〉

개 정 안

제56조(조사의 위촉)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위촉할 수 있다.

1. 소년의 심신상태,品行, 경력, 가정 상황, 그 밖의 환경
2. 소년과 보호자의 관계, 보호자의 소년에 대한 보호감독상황 및 향후 보호능력
3. 피해자에 대한 관계 및 재범의 위험성과 정도
4. 그 밖에 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사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697호 2016. 11. 29. 공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15조”로 한다.

제21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의”를 “등록사항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5항) 중 “제2항 또는 제4항”을 “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5조제2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성명란에 사망(실종신고·부재신고 포함)이 표시되어 있는 자녀(양자 포함)의 특정등록사항을 제외하고 발급한다.

제21조제7항(중전의 제8항) 중 “제1항의”를 “등록사항별”로, “제7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서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의2(특정증명서의 작성방법) 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법 제15조제4항의 특정 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작성한다.

1.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신청인이 선택한 현재의 친권·후견에 관한 사항

제23조제1항 중 “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등록사항별증명서”로 한다.

제28조제2항 본문 중 “등록사항별 증명서(일부사항증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등록 사항별 증명서”로 한다.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출생증명서를 대신하여 첨부할 수 있는 서면)

- ① 법 제44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으로서 모의 진료기록 사본이나 자의 진료기록 사본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등 모의 임신사실 및 자의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법 제44조제4항제2호의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일부장관이 발행한 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확인서
 2. 외국 관공서 등에서 발행한 출생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38조의3(진단서 등을 대신하여 첨부할 수 있는 서면) 법 제84조제3항의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2. 군인이 전투 그 밖의 사변으로 사망한 경우에 부대장 등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여 그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
3.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제51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의 기록을 생략하여야 한다.

1. 출생신고인이 부 또는 모인 경우
2. 출생신고인이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제87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1.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
2.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

제87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7조제2항의”를 “전항의 확인을 받아”로 한다.

- ④ 제1항제1호의 확인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87조제6항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제19조(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등록사항별 증명서"라 한다)의 교부신청은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고, 대리인이 법 제14조제1항의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이조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때에는 본인등의 위임장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5조----- ----- ----- ----- ----- ----- ----- ----- ----- ----- -----.
제21조(증명서의 작성방법)	제21조(증명서의 작성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별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에 의한다.	〈삭 제〉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시·읍·면의 장의 직명(직무대리자의 경우에는 대리자격도 표시하여야 한다)과 성명을 기록한 후 그 직인을 찍어야 한다.	① 등록사항별----- -----.
③·④ (생 략)	②·③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⑤ 제2항 또는 제4항의 경우에는 인증기에 직인을 부착하여 인증할 수 있고, 자동천공방식으로 간인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 ----- -----.

행
위

⑦ 가족관계증명서는 제6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는 증명서 교부 당시의 유효한 사항만을 모아
서 발급한다. 〈단서 신설〉

⑧ 시·읍·면의 장은 청구인이 제1항의 증명서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에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개별증명서로 발급하여야 한다.

⑨ (생략)
〈신설〉

제21조의2(일부사항증명서의 작성 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의 기록사항 중 일부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이하 “일부 사항증명서”라고 한다)는 정정이력사항 및 다음 각 호와 관련된 기록사항을 제외하고 작성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가. 혼인 외 또는 전혼 중의 자녀
나. 사망한 자녀

2. 기본증명서

가. 기아발견
나. 인지
다. 친권·후견 종료
라. 실종선고취소

개 정 안

⑤ (현행 제6항과 같음)

(6) ----- 제5항-----

----- . 다만, 법 제15조제2항
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성명란에 사망
(실종선고·부재선고 포함)이 표시되어 있는
자녀(양자 포함)의 특정등록사항을 제외하고
발급한다.

⑦ ----- 등록사항별 -----

----- 제6항 -----.

⑧ (현행 제9항과 같음)

⑨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서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21조의2(특정증명서의 작성방법)

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법 제 15조제4항의 특정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작성한다.

1.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
일 및 주민등록번호

2. 신청인이 선택한 현재의 친권·후견에 관한
사한

현 행

마. 국적취득바. 성·본 창설 및 변경사. 개명아. 가족관계등록창설3. 혼인관계증명서가. 혼인취소나. 이혼4. 입양관계증명서가. 입양취소나. 파양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친양자입양취소나. 친양자파양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부 사항증명서에는 대
법원예규가 정하는 방법으로 등록사항별 증
명서 중 일부사항만에 대한 증명이라는 취지
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23조(증명의 범위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
제한)

① 시·읍·면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사
항별 증명서를 교부할 때, 각 증명서의 본인
또는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란 및 일반등록사
항란에 기록된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그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등록
사항별 증명서의 주민등록번호 일부 공시제
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
한다.

개 정 안

제23조(증명의 범위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
제한)

① -----등록사항별증명서

-----.

현 행

제28조(증명서등의 수수료)

- ① (생 략)
- ② 등록사항별 증명서(일부사항증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제적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1,000원으로 하고,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으로 한다. 다만, 무인 증명서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300원으로 하고,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제적부의 열람 및 제적 등·초본 발급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 ③·④ (생 략)

〈신 설〉

개 정 안

제28조(증명서등의 수수료)

- ① (현행과 같음)
- ② 등록사항별 증명서-----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출생증명서를 대신하여 첨부할 수 있는 서면)

- ① 법 제44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으로서 모의 진료기록 사본이나 자의 진료기록 사본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등 모의 임신사실 및 자의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법 제44조제4항제2호의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일부장관이 발행한 북한 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확인서
 2. 외국 관공서 등에서 발행한 출생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현 행

〈신 설〉

제51조(기록근거의 기록)

- ① (생 략)
- ② 제1항제2호의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사건본인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그 성명의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출생신고인이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그 성명의 기록을 생략하여야 한다.

제87조의2(확인사건의 처리절차)

-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가정법원 확인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 ② 법 제57조제2항의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 정 안

제38조의3(진단서 등을 대신하여 첨부할 수 있는 서면)
법 제84조제3항의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2. 군인이 전투 그 밖의 사변으로 사망한 경우에 부대장 등이 사망사실을 확인하여 그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
3.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제51조(기록근거의 기록)

- ① (현행과 같음)
- ② -----

-----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의 기록을 생략하여야 한다.
1. 출생신고인이 부 또는 모인 경우
2. 출생신고인이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제87조의2(확인사건의 처리절차)

- ① 다음 각 호의 사건의 처리 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1.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
2.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
- ② 전항의 확인을 받아-----
-----.

현 행

③ (생 략)

〈신 설〉〈신 설〉④·⑤ (생 략)

개 정 안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1호의 확인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부 또
는 모의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87조제6항을 준
용한다.

⑥·⑦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698호 2016. 11. 29. 공포)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②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다른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2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를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리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2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u>선물</u>”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u>향응</u>”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u>금품등</u>”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제2조(정의) -----. 1.·2. (현행과 같음) 3. “<u>금품등</u>”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u>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u> 나. <u>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u> 다. <u>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u> 〈삭 제〉 제13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현 행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법원 행정처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 ②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3.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④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 정 안

- ②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다른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현 행

제13조의2(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가를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회의등이 끝난 후 대가를 받는 즉시 그 내역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③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회의등에 관하여는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회의등을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 정 안

〈삭 제〉

〈삭 제〉

현 행

제15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생략)

제16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개 정 안

제15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 ① -----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

-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현 행

②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장이 법원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관 및 법원공무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2.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3. 그 밖에 소속기관이나 소속기관의 장 명의로 지급되거나 특별한 사유로 소속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제20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 ① 제14조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고 그 금품등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 정 안

〈삭 제〉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대법원규칙 제2699호 2016. 11. 29. 공포)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 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① 법 제7조제4항제4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2. 사무분담의 변경
3. 소송이 계속중인 사건과 관련한 부정청탁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의 재배당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 제3호의 조치를 취하려면 미리 해당 재판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조(교육 등)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매년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매년 받아야 한다.

제4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처리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신고·처리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법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신고자등의 보호·보상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에 관한 사무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내 규

◎ 법관 및 법원공무원 국내위탁교육훈련 내규 일부개정내규

(대법원내규 제474호 2016. 11. 30. 결재)

법관 및 법원공무원 국내위탁교육훈련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국내위탁교육훈련의 구분(제3조 및 제6조제1항 관련)

구 분		훈 련 기 관	훈련기간	훈련대상자격
국내 위탁 교육 훈련	장기 훈련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통일교육원 통일미래지도자과정	1년	일반직 4급 이상
		KAIST 지식재산대학원 미래전략대학원 석사과정	2년	법관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디지털포렌식학 전공 석사과정	2년	법관
		국내주간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과정	3년	일반직 8급 이상 5급 이하
		국내대학원 석사과정	2년 ~ 2년 6개월	법관 및 일반직 8급 이상
		국내사이버대학교 학사과정	4년	직급제한 없음
		국내외국어연수(주간)	6개월	일반직 8급 이상 4급 이하
	단기 훈련	국내대학원 전문과정	6개월 미만	법관 및 일반직 3급 이상
		국내외국어연수(야간)	20주 이하	일반직 8급 이상 4급 이하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등	2일 ~ 7일	직급제한 없음

※ 비고

1. 신규교육과정 개설 시에는 위 과정의 기준과 가장 유사한 교육과정으로 본다.
2. 외부교육훈련기관에서 정하는 별도의 자격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적용한다.
3. 장기훈련에 있어 훈련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훈련기관에서 부담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훈련대상의 직급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2]

국내위탁교육훈련대상 자격 요건(제6조제2항 관련)

구분	훈련 과정	자 격 요 건
장기 훈련	국내주간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과정	○ 8급 이상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중 실 근무기간이 3년(단, 8급은 5년) 이상인 사람 ○ 공고일을 기준으로 만 45세 이하인 사람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디지털포렌식학 전공 석사과정	○ 법관 중 실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국내대학원 석사과정	○ 법관 및 8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중 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공고일을 기준으로 만 52세 이하인 사람
	국내사이버대학교 학사과정	○ 사법부 소속 공무원(직급 제한 없음) 중 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KAIST 지식재산대학원 미래전략대학원 석사과정	○ 법관 중 실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국내외국어연수(주간)	○ 8급 이상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중 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단기 훈련	국내대학원 전문과정	○ 법관 중 실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 일반직 3급 이상 중 법원행정처 소속인 사람
	국내외국어연수(야간)	○ 8급 이상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중 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비고

1. 장기훈련의 석사과정 및 국내외국어연수 훈련대상자는 최근 5년 이내에 1개월 이상 국내·외 연수를 다녀온 적이 없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디지털포렌식학 전공 석사과정은 예외로 한다.
2. 외부교육훈련기관에서 정하는 별도의 자격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적용한다.
3. 실 근무기간은 법원에 실제 근무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및 제72조의 휴직 기간은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육아휴직기간(자녀 2명까지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셋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과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포함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표 1]

국내위탁교육훈련의 구분 (제3조 및 제6조제1항 관련)

구 분	훈 련 기 관	훈련 기간	훈련대상 자격
국내 위탁 교육 훈련	장기 훈련	국가공무원인재 개발원 고위정책과정,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통일교육원 통일미래지도자 과정	1년 일반직 4급 이상
		KAIST 지식재산대학원 미래전략대학원 석사과정	2년 법관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디지털포렌식학 전공 석사과정	2년 법관
		국내주간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과정	3년 일반직 8급 이상 5급 이하
		국내대학원 석사과정	2년 ~ 2년 6개월 법관 및 일반직 8급 이상
		국내사이버대학교 학사과정	4년 직급제한 없음
	단기 훈련	국내대학원 전문과정	6개월 미만 법관 및 일반직 3급 이상
		국내외국어연수	20주 일반직 4 ~ 8급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등	2일 ~ 7일 직급제한 없음

개 정 안

[별표 1]

국내위탁교육훈련의 구분 (제3조 및 제6조제1항 관련)

구 분	훈 련 기 관	훈련 기간	훈련대상 자격
국내 위탁 교육 훈련	장기 훈련	국가공무원인재 개발원 고위정책과정,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통일교육원 통일미래지도자 과정	1년 일반직 4급 이상
		KAIST 지식재산대학원 미래전략대학원 석사과정	2년 법관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디지털포렌식학 전공 석사과정	2년 법관
		국내주간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과정	3년 일반직 8급 이상 5급 이하
		국내대학원 석사과정	2년 ~ 2년 6개월 법관 및 일반직 8급 이상
		국내사이버대학교 학사과정	4년 직급제한 없음
		국내외국어연수 (주간)	6개월 일반직 8급이상 4급 이하
	단기 훈련	국내대학원 전문과정	6개월 미만 법관 및 일반직 3급 이상
		국내외국어연수 (야간)	20주 이하 일반직 8급이상 4급 이하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등	2일 ~ 7일 직급제한 없음

현 행

※ 비고

1. 신규교육과정 개설 시에는 위 과정의 기준과 가장 유사한 교육과정으로 본다.
2. 외부교육훈련기관에서 정하는 별도의 자격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적용한다.
3. 장기훈련에 있어 훈련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훈련기관에서 부담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훈련대상의 직급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2]

국내위탁교육훈련대상 자격 요건
(제6조제2항 관련)

구분	훈련 과정	자 격 요 건
장기 훈련	국내주간법학 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과정	○ 8급 이상 5급 이하 일반 직공무원 중 실 근무기간 이 3년(단, 8급은 5년) 이상인 사람 ○ 공고일을 기준으로 만 45 세 이하인 사람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 대학원 디지털포렌식학 전공 석사과정	○ 법관 중 실 근무기간이 5 년 이상인 사람
	국내대학원 석사과정	○ 법관 및 8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중 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공고일을 기준으로 만 52 세 이하인 사람
	국내사이버 대학교 학사과정	○ 사법부 소속 공무원(직급 제한 없음) 중 실 근무기 간이 3년 이상인 사람
	KAIST 지식재산대학원 미래전략대학원 석사과정	○ 법관 중 실 근무기간이 5 년 이상인 사람

개 정 안

※ 비고

1. 신규교육과정 개설 시에는 위 과정의 기준과 가장 유사한 교육과정으로 본다.
2. 외부교육훈련기관에서 정하는 별도의 자격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적용한다.
3. 장기훈련에 있어 훈련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훈련기관에서 부담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훈련대상의 직급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2]

국내위탁교육훈련대상 자격 요건
(제6조제2항 관련)

구분	훈련 과정	자 격 요 건
장기 훈련	국내주간법학 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과정	○ 8급 이상 5급 이하 일반 직공무원 중 실 근무기 간이 3년(단, 8급은 5년) 이상인 사람 ○ 공고일을 기준으로 만 45 세 이하인 사람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 대학원 디지털포렌식학 전공 석사과정	○ 법관 중 실 근무기간이 5 년 이상인 사람
	국내대학원 석사과정	○ 법관 및 8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중 실 근무기간 이 3년 이상인 사람 ○ 공고일을 기준으로 만 52 세 이하인 사람
	국내사이버 대학교 학사과정	○ 사법부 소속 공무원(직급 제한 없음) 중 실 근무기 간이 3년 이상인 사람
	KAIST 지식재산대학원 미래전략대학원 석사과정	○ 법관 중 실 근무기간이 5 년 이상인 사람
	국내외국어연수(주간)	○ 8급 이상 4급 이하 일반 직공무원 중 실 근무기간 이 3년 이상인 사람

현 행

구분	훈련 과정	자 격 요 건
단기 훈련	국내대학원 전문과정	○ 법관 중 실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 일반직 3급 이상 중 법원 행정처 소속인 사람
	국내외국어연수	○ 8급 이상 4급 이하 일반 직공무원 중 실 근무기간의 3년 이상인 사람

※ 비고

1. 장기훈련의 석사과정 훈련대상자(법학전문석사과정 포함)는 최근 5년 이내에 1개월 이상 국내·외 연수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디지털포렌식학 전공 석사과정은 예외로 한다.
2. 외부교육훈련기관에서 정하는 별도의 자격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적용한다.
3. 실 근무기간은 법원에 실제 근무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및 제72조의 휴직 기간은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육아 휴직기간(자녀 2명까지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셋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과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포함한다.

개 정 안

구분	훈련 과정	자 격 요 건
단기 훈련	국내대학원 전문과정	○ 법관 중 실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 일반직 3급 이상 중 법원 행정처 소속인 사람
	국내외국어연수(야간)	○ 8급 이상 4급 이하 일반 직공무원 중 실 근무기간의 3년 이상인 사람

※ 비고

1. 장기훈련의 석사과정 및 국내외국어연수 훈련대상자는 최근 5년 이내에 1개월 이상 국내·외 연수를 다녀온 적이 없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디지털포렌식학 전공 석사과정은 예외로 한다.
2. 외부교육훈련기관에서 정하는 별도의 자격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적용한다.
3. 실 근무기간은 법원에 실제 근무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및 제72조의 휴직 기간은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육아 휴직기간(자녀 2명까지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셋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과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포함한다.

예 규

◎ 청사유지관리지침 전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090호 2016. 11. 23. 결재)

청사유지관리지침 예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청사유지관리지침

I. 일반지침

1. 이 지침은 각급 법원과 등기소의 청사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수선비를 절약하고, 청사 및 부대시설의 내구연한을 연장시키며, 재해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원청사 관리내규에 따라 지정된 청사관리관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청사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이 지침에 따라 수시로 청사를 점검케 하여야 한다.
3. 청사관리관 및 청사관리담당자는 이 지침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각종 시설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청사관리관은 별표1 청사 및 시설 유지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5. 청사관리담당자는 별표2 청사 및 부대시설 점검기준표에 의거한 청사점검일지를 비치하고, 정기적으로 청사 및 부대시설을 점검하여 일지를 작성한 후 청사관리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6. 청사관리관은 청사 및 부대시설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 하자발생통보, 예산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를 방지하여 나중에 대규모 보수를 요하는 사태를 야기하여서는 아니된다.
7. 청사관리관은 청사 및 부대시설 공사에 따른 하자유무를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확인하여 하자를 발견한 때에는 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청사관리관은 청사 및 부대시설에 관한 각종 도면 및 자료를 정확히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9. 각급 법원 본원의 청사관리관은 수시로 그 산하 지원 및 등기소의 청사관리실태를 감독하고, 청사관리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청사관리관이 청소·설비관리를 위하여 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II. 청사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요령

1. 건축분야

가. 태풍, 화재 등 재해 시 관리

- (1) 태풍 시에는 창호를 닫아 창호 및 유리를 보호하고, 피뢰침 등 외부 공작물의 고정상태를 점검한다.
- (2) 화재 시에는 즉시 소방관서에 연락하고, 방화셔터·방화문을 봉쇄하고 옥내 소화전 및 소화기를 활용하여 초기에 진화한다.

나. 창호의 관리

- (1) 창호는 항상 원활하게 개폐되도록 한다. 정척, 도어체크, 플로어힌지, 도어록 등을 무리하게 사용하면 창호에 손상을 가하게 되므로 주의하고 창호 철물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리하도록 한다.
- (2) 페인트 도장면은 항시 물기가 없도록 하고, 먼지떨이 또는 마른걸레로 청소하도록 한다.
- (3) 합판을 사용한 목재문에는 물청소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4) 동, 놋쇠, 스테인레스 등은 항상 마포로 닦아내고, 철물류에는 물청소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5) 창호 철물은 수시로 조정을 하고, 기름칠을 한다.
- (6) 외기와 접한 출입구가 밀폐되지 않고, 틈새가 벌어지거나 잠금장치의 고장 등으로 외기가 인입되는 경우 실내배관이 동파되거나 난방효율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수시로 출입구를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 (가) 주출입구 방풍실 강화도어의 플로어힌지는 기온 급강하 시 기능이 저하되어 개폐가 원활하지 못하고, 유리의 파손이 우려되므로 수시로 점검, 조정하여야 한다.
- (나) 미닫이창은 창문의 변형이나 창호 철물의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틈새가 벌어지거나 개폐가 원활하지 못하고, 여닫이창은 바람 등의 영향으로 스스로 열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시로 잠금장치의 점검이 필요하며, 복층 유리는 틈이 생기거나 균열이 발생할 경우 방음 및 단열기능이 상실되므로 수시로 점검·교체하여야 한다.

다. 대리석, 화강석, 테라조의 관리

- (1) 대리석, 화강석, 테라조로 된 벽, 카운터는 수시로 먼지떨이로 먼지를 떨고 마른걸레질을 하며 광택용 왁스를 칠하여 연마하도록 한다.
- (2) 테라조 바닥은 먼지를 청소한 후 꼭 짠 물걸레로 닦아내도록 하며 왁스를 바른 후 전기폴리싱 장비로 연마하도록 한다.
- (3) 화강석 바닥 및 계단은 수시로 물청소를 하며, 주기적으로 왁싱작업을 한다.

라. 비닐무석면타일(일명 디럭스타일) 관리

- (1) 비닐무석면타일 또는 비닐타일은 월1회 정도 왁스를 바른 후 전기 폴리싱장비로 연마한다.
- (2) 비닐무석면타일 또는 비닐타일은 온도가 섭씨 60도 이상이 되면 인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화기

에 주의하여야 하고, 습기가 있을 경우 광택을 잃게 되고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마. 미장관리

벽, 바닥, 창틀주위, 접속부 등에 균열이나 들뜸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접착제(치오콜, 실리콘) 등을 사용하여 보수하도록 한다.

바. 타일관리

- (1) 타일은 젖은 걸레, 브러시 등으로 닦아주도록 한다.
- (2) 오손되기 쉬운 화장실 바닥은 세척제를 사용하여 브러시 등으로 닦아낸다.

사. 카펫 관리

- (1) 카펫은 반드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여야 하고, 빗자루나 걸레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2) 진공청소기는 반드시 한쪽 방향으로만 사용한다
- (3) 잉크, 페인트, 기름 등에 의하여 오염되었을 때에는 오염 부위에 적당한 세척제를 사용하여 즉시 세척한 후 카펫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아. 옥상, 우수 및 오수관, 우수 및 오수맨홀, 빗물받이 관리

- (1) 옥상은 월1회 이상 청소하고, 오물을 제거하며 필요할 때에는 물세척을 실시한다. 특히 루프드레인의 막힘이 없도록 주의하고, 막혔을 때에는 즉시 제거한다. 또한, 비온 후 고인 물 등을 드레인 쪽으로 배출한다.
- (2) 우수 및 오수관, 우수 및 오수맨홀 등은 월1회 이상 점검하고 청소한다. 또한, 트랜치, 집수정, 빗물받이 등은 주1회 이상 찌꺼기 등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 막힘이 없도록 한다.

자. 정원관리

정원수가 고사하는 일이 없도록 배수 등에 주의를 기울이고, 정원 내 잡초는 수시로 제거한다.

차. 물탱크실, 옥상 및 현관 캐노피 배수로 관리

- (1) 물탱크실의 바닥배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장비의 훼손이나 누전사고의 우려가 있고, 실내로 물이 유입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점검하고 배수로를 정비한다.
- (2) 옥상·현관 캐노피(차양) 우수배관 및 선홈통의 배수가 막힐 경우 물이 역류할 위험이 있으므로 수시로 점검하고 배수로를 정비한다.

카. 천장 및 벽체 단열재의 점검

외부에 면한 단열재가 훼손될 경우 기능이 저하되어 난방배관의 동파가 우려되므로 월1회 이상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타. 부대시설 점검

- (1) 경량 가설건물이나 지붕에 눈이 쌓일 경우 적설하중으로 인한 붕괴 및 처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쌓인 눈을 제거하여야 한다.

- (2) 장애인 등 출입용 경사로에 눈이 쌓이거나 결빙될 경우 휠체어가 미끄러지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눈을 제거하여 결빙상태를 해소시켜야 한다.

파. 해빙기의 주요 점검

- (1) 얼음이 녹을 경우 석축이나 옹벽에 배부름 현상이 발생하거나 건축물 주변 지표면이 침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수시로 점검하고, 붕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 외벽 타일의 들뜸, 박리 및 벽체 균열발생 유무를 수시로 점검하고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전기분야

가. 전기안전관리

- (1)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영의 안전을 기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기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다.
- (2) 전기설비의 안전점검이 필요한 때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에 검사를 의뢰하여 보수, 관리한다.

나. 조명설비

- (1) 사무실의 쾌적한 환경과 경제성을 고려 300lux~500lux의 조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 (2) 자연광을 최대한 이용하고 전등을 분리 소등하며, 창측은 별도 회로로 소등할 수 있게 한다.
- (3) 조명기구가 먼지로 더러워지면 조도가 현저히 저하되므로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청소한다.
- (4)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절전형 조명 기구를 사용한다.

다. 콘센트설비

- (1) 콘센트 및 연결기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하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접지선을 설치한다.
- (2) 전기기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표면에 노출로 전선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전선관이나 알루미늄 몰드로 견고히 설치하여 사용한다.
- (3) 한 콘센트에 여러 기구를 동시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각종 전선

- (1) 각종 전선은 충분한 굵기와 KS표시 제품을 사용한다.
- (2) 충분한 이격거리와 전선의 손상, 연결부의 과열, 부식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마. 분전함

- (1) 함내의 누수 및 습기에 의하여 부식이 되지 않도록 한다.
- (2) 계기의 부착상태와 전선의 접속 상태가 완전치 못하면 위험하므로 견고하게 고정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3) 접지유무를 확인하고(없을 때에는 반드시 설치), 문짝에는 회로별 설명(결선도)을 부착한다.

바. 피뢰침

- (1) 고정상태와 접속부의 연결상태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부식이 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2) 피뢰침 접지는 타 접지와 분리하여 최소한 5m 이상 이격하여 매설한다.

사. 소방설비

습기에 의하여 부식 및 단락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각종 계기 및 표시 등의 동작상태와 전선의 접속상태를 점검하여 사고발생 시 정확히 동작되도록 한다.

3. 통신분야

가. 전화설비

전화 교환기기는 습기 및 먼지 등의 영향이 크므로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외부의 충격이나 고온에 주의하여야 한다.

나. 방송설비

방송앰프는 건조한 장소에 설치하고, 고압 및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기와 이격시켜 잡음에 주의하고, 비상방송 겸용일 때에는 화재경보기와 연동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 보관한다.

다. 기타 약전설비

CCTV와 비상호출 설비는 비상호출 시 서로 연동이 되는지 확인하고, CCTV 화면에 노이즈가 발생하지 않는지 수시로 점검한다.

4. 기계설비분야

가. 보일러 관리

- (1) 보일러는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토록 하고, 각종 부착기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2) 하절기에는 보일러의 장기간 운휴에 따른 부식방지, 청소, 점검 등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3) 외기 온도가 영하 3℃ 이하일 경우 난방, 온수 순환펌프를 2시간에 20분씩 가동하고, 영하 5℃ 이하일 경우 열원설비(보일러 등)와 함께 운전한다.
- (4) 온수보일러가 설치된 등기소나 관사 등은 공휴일이나 야간에 온도조절기(센서)의 운전설정을 외출로 하거나 난방온수 온도를 50℃ 내외로 조절한다.
- (5) 보일러 및 압력용기는 법적기준에 따라 연1회 이상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냉동기(냉온수기 포함) 관리

- (1) 냉동기(냉온수기 포함)의 부착기기 및 주위 배관은 결로현상으로 부식이 우려되므로 보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습한 곳은 마른 걸레로 자주 닦아주어 기기를 보호한다.
- (2) 냉동기(냉온수기 포함) 가동 전에 냉매의 누설여부를 점검하여 에너지 손실을 방지한다.
- (3) 옥상에 설치한 냉각탑 내부 수조(부속류 포함)의 냉각수는 완전히 배수 시키고 밸브는 열려

있는 상태로 둔다.

(4) 냉동기는 법적기준에 따라 연1회 이상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공기조화기, 패키지에어콘, 룸에어콘, 온풍기 등 관리

(1) 공기조화기, 패키지에어콘, 룸에어콘, 온풍기 등의 에어필터는 6개월에 1회 이상 세척하여 실내의 공기를 청정하게 한다.

(2) 패키지에어콘, 룸에어콘, 온풍기 등의 장기간 운휴 시에는 커버를 덮어 보관한다.

(3) 매 일과시간 이후 공기조화기의 외기인입댐퍼나 배기댐퍼의 완전 닫힘 상태를 확인한다.

(4) 냉방기(에어콘)용 실외기 팬은 보양을 철저히 하고, 내부 응축수는 완전히 배수시킨다.

(5) 매 일과시간 이후 화장실 환풍기 외기 차단그릴의 작동 여부 및 완전 닫힘 상태를 확인한다.

라. 냉·난방기 관리

(1) 방열기 및 팬코일유니트의 전면이나 상부에 물건을 놓으면 연결 배관이 누수될 우려가 있고, 공기순환이 저하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2) 방실별로 설치된 팬코일유니트의 스위치 접속 여부를 퇴실 시 반드시 점검 하여 불필요한 가동에 따른 전력낭비가 없도록 한다.

(3) 방열기 및 팬코일유니트의 효율이 약할 때에는 에어핀을 사용하여 공기빼기를 함으로써 정상 작동하도록 한다.

마. 물탱크(저수조, 고가수조) 관리

수조는 법적기준에 따라 월1회 이상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반기에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연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정화조 관리

(1) 정화조는 연1회 이상 청소하여야 한다.

(2) 기계식 정화조는 기기 및 장비의 작동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각 조치를 취하여 하수도 오염을 막아야 한다.

(3) 부패식 정화조는 맨홀이 열려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사. 급, 배수 관리

(1) 세면기, 변기, 수세기, 싱크대 등에는 오물, 걸레, 찌꺼기 등이 투입되지 않도록 하고 배수구가 막혔을 때에는 청소를 하도록 하되, 나무, 파이프 등의 사용은 배관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2) 후렛쉬밸브의 물이 정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밸브에 이물이 막힌 경우가 많으므로, 유입측 밸브 상부의 나사를 돌려 물을 잠근 다음 수리한다.

(3) 종이, 모발, 담배꽂초 등은 배수관을 막히게 하는 원인이 되므로 항상 주의를 요한다.

(4) 수전의 누수는 패킹 마모에 그 원인이 있으므로 밸브를 잠근 후 패킹을 교환한다.

- (5) 플로트스위치 또는 불탑 등은 녹이 슬지 않도록 하고 작동여부를 점검한다.
- (6) 세면기, 수세기의 배수가 원활하지 않을 때는 배수트랩을 청소한다
- (7) 관사의 위생기구(대변기, 소변기, 세면기 등) 배관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배관 및 배수트랩의 봉수가 동결될 우려가 있으므로 작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
- (8) 옥외에 노출되어 있는 수도계량기함은 보양을 철저히 하고, 조정 급수용 수전은 단수시키고, 내부에 들어있는 물은 완전히 배수시킨다.
- (9) 수도계량기는 법적기준에 따라 6년 또는 8년에 1회 검정·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 (10) 급수관은 법적기준에 따라 준공 후 5년이 지난날로부터 2년 주기로 급수관 상태에 대해 일반 검사(기초조사, 급수관내 정체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아. 소방설비 관리(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하론가스소화설비 등)

- (1) 소방설비는 동력펌프의 동작상태, 압력, 또는 주위 배관의 누수 등을 점검한다.
- (2) 소방설비는 매년 2회 이상 기능점검(작동기능점검 1회, 종합정밀점검 1회)을 하여야 한다.

자. 가스시설

- (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법적기준에 따라 연1회 이상 검사를 받아야 한다.
- (2) 액화천연가스 사용시설은 법적기준에 따라 연1회 이상 검사를 받아야 한다.
- (3) 정압기는 법적기준에 따라 설치 후 3년까지는 1회 이상, 그 이후에는 4년에 1회 이상 분해점검을 한다.
- (4) 조정기는 법적기준에 따라 3년에 1회 이상 분해점검을 한다.
- (5) 가스계량기는 법적기준에 따라 5년 또는 8년에 1회 검정·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차. 부대시설 등

동파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옥외배관(우수·오수·상수 등)은 주의 깊게 수시로 확인하고, 보온재의 훼손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양을 철저히 한다.

카. 해빙기의 배관 점검

기온이 내려갔다가 갑자기 상승하는 경우 옥외배관(우수·오수·상수 등)의 신축현상으로 인한 이음 부위의 누수 및 누기현상이 발생하여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6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청 사 및 시 설 유 지 관 리 대 장

작 성 자	소속	직위	성명	(인)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인)					
가. 개 요									
건 물 명	법원		지원	등기소					
구 조	조		층	개동					
면 적	건축면적		평	m2					
	연면적		평	m2					
	구분	층수	지하층	1층	2층	3층	4층	5층	
건축연월일	착공 :		년	월	일				
	준공 :		년	월	일				
	구분	금액	공 사 비			비 고			
			도급금액	관급자재비	계				
	건축								
	기계								
	전기								
	소방								
	통신								
	토목 / 조경								
부대시설									
합계									
설 계 감 리	설 계 자 :								
	감 리 자 :								
전 력 설 비	전등 : LED 개, 형광등 개, 백열등 개 콘센트 개소 동력 : 저압모터 Hp 대 냉동기 Hp 대								
나. 시설·설비									
건 물 외 부 재 료	외 벽 : 기 둥 : 창 호 : 옥상방수 : 복합방수, 쉬트, 아스팔트, 액체방수로 구분 지하실방수 :								

내 부 마 감 재 료	주 요 부	바 닥	벽	천 정
	현관홀 원장실 사장실 복도 법정 기타			
주 요 설 비	변전설비 : 전등용 동력용 냉방용 난방설비 : 보일러 냉온수기 방열기			KWA KWA KWA 기 기 조
급 수 설 비	고가수조용량 급수펌프	m2		개소 대
방 화 설 비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쿨러			개소 개소 개소
냉 방 설 비	패키지용 : 룸에어콘 : 냉 동 기(냉온수기) : 팬 코 일 :		R/T	기 대 기 조
전 화 설 비	교 환 대 : 국선	회선, 내선	형식	대 회선
발 전 설 비	발 전 기 :	형식	용량	대
방 송 설 비	앰프설비 :	전관방송 법 정 대회의실용	용	【W/대】 【W/대】 【W/대】
방 재 설 비	방재설비 :	화재경보설비 화재탐지설비		형식/회선 형식/회선
옥 내 공 작 물	공 작 물 : 경 유 탱 크 용량 병커시유탱크 용량 물 탱 크 용량 정 화 조 : 정 화 방 법 용량			개소 개소 개소 개소
위 생 설 비	소변기 대변기 수세기 세면기 욕 조 샤 위	형식 형식 형식 형식	형식 형식	기 기 기 기 개소 개소

[별표 2]

청사 및 부대시설 점검기준표

(1) 건축 및 내장 점검

점검 항목	점 검 내 용	점 검 주 기		
		수시	주	월
옥 외 공작물 관 리	1. 부지 내 상수관, 우수관, 오수관, 급수관, 배수관, 집수정(맨홀)배수로, 포장의 침하, 균열, 파손 누수 여부 점검 2. 경사지(법면) 토사유실, 옹벽, 석축의 균열 확인 3. 폭설로 인한 경량 가설건물, 천막지붕의 붕괴 및 처짐 여부 점검 4. 장애인용 경사로에 눈이 쌓이거나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지 확인 5. 해빙기 석축이나 옹벽에 붕괴 우려가 있거나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하는지 여부 확인 6. 외벽타일의 들뜸, 박리 및 벽체에 균열이 발생하는지 여부 확인	○ ○ ○ ○ ○	○ ○	
방 수	1. 옥상의 치켜올림(파라펫), 우수홈통 루프드레인 등 이질재와 접속부 주위의 균열 누수여부 점검 2. 방수층 보호용 모르타르 균열과 신축줄눈 보호용 아스팔트 코킹의 탈락으로 누수 여부 점검 3. 지하실, 물탱크실 벽, 지하실 정화조 등 균열발생 여부 점검 4. 신·구건물 접합부의 균열발생으로 누수되는지 여부 확인		○ ○ ○	○ ○ ○
지 붕	1. 함석 및 철판잇기, 고정 철물 탈락과 페인트가 퇴색, 박리된 것은 없는지 여부 확인 2. 기와, 스테트의 훼손 및 페인트가 퇴색된 것은 없는지 여부 확인 3. 처마홈통, 선홈통, 보호홈통 등의 파손 여부 확인			○ ○ ○
돌 밑 타 일	1. 바닥돌 및 벽붙임돌의 줄눈훼손 또는 접착불량으로 파손 여부 확인 2. 타일부위의 접착불량, 모르타르 충전 불량으로 타일이 탈락되거나 파손된 것은 없는지 확인			○ ○
목 조 내 장	1. 창틀, 문틀, 벽부돌림틀, 민원대, 선반, 합판벽 등(수장재) 건조불량으로 뒤틀림, 파손 또는 도장이 퇴색되었는지 여부 확인 2. 천정텍스류, 본드류의 접착불량으로 탈락 또는 훼손된 곳은 없는지 확인			○ ○
미 장	1. 벽, 천정, 바닥 등의 들뜸, 균열, 탈락 여부 확인 2. 테라조(바닥인조석)의 균열, 파손된 곳은 없는지 여부 확인 3. 바닥 낫쇠줄눈 훼손여부 확인			○ ○ ○

점검 항목	점 검 내 용	점 검 주 기		
		수시	주	월
창 호	1. 목재, 철재, 알루미늄, 강화유리문과 철재서터 등 개폐불량하거나 파손된 곳은 없는지 확인 2. 철재창호, 알루미늄, 목재창 등 파손된 곳은 없는지 확인 3. 각종 창호철물 부착상태, 파손 또는 훼손 여부 확인 4. 창틀 주위 및 창대 밑에 누수되는지 여부 확인 5. 목재 및 철재창호의 페인트도장 퇴색 여부 확인 6. 유리끼움용 퍼티 훼손 여부 점검 7. 방풍실 강화도어의 개폐 불량이나 파손된 곳은 없는지 확인 8. 외기에 접한 출입문 잠금장치 등의 고장으로 인한 개폐불량 여부 확인 9. 미닫이문의 변형 및 창호철물의 고장으로 인한 개폐불량 여부 확인 10. 여닫이문이 고장으로 잠기지 않거나 스스로 열리는지 여부 확인 11. 복층유리 파손 여부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수 장 금 속	1. 바닥, 비닐무석면타일(디럭스), 리놀륨, 라바타일(걸레받이) 등 탈락, 훼손된 곳은 없는지 여부 확인 2. 계단, 논슬립, 난간대, 벽부 부착철물 등 훼손 여부 확인			○ ○
도 장	1. 건물 내외벽부 도장제가 탈락, 변질된 곳은 없는지 여부 확인 2. 철부 및 목부의 착색제 변질로 얼룩이나 탈락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확인			○ ○
단열상 태점검	1. 외기에 면한 단열재의 훼손 여부 확인			○
건물내 배수로 관 리	1. 물탱크실 배수로의 결빙상태 확인 2. 옥상·현관 캐노피(차양) 우수배관 및 선홈통의 결빙상태 확인	○	○	
기 타	1. 화장실, 탕비실, 실내 배수트랩 및 각종 점검구 부착물 등이 훼손된 곳은 없는지 확인			○

(2) 전기시설 점검

점검 항목	점 검 내 용	점 검 주 기		
		수시	주	월
조 명 기 구	1. 청소 및 설치상태 확인 2. 안정기 발열 및 소음 확인 3. 접지 확인	○		○ ○
콘센트	1. 전선접속 및 설치상태 확인 2. 과다사용에 따른 발열 확인 3. 접지 확인	○		○ ○

점검 항목	점 검 내 용	점 검 주 기		
		수시	주	월
전 선	1. 과열, 손상, 부식상태 확인 2. 연결부의 접속, 과열상태 확인 3. 충분한 굽기사용 확인	○ ○		○
분전함	1. 함내 누수, 습기, 부식상태 확인 2. 전선접속 및 계기부착상태 확인 3. 단선결선도 부착 확인 4. 접지 확인	○		○ ○ ○
피뢰침	1. 고정 및 접속, 부식상태 확인			○
소 방 설 비	1. 각종 계기 및 표시등 동작여부 확인	○		

(3) 통신설비 점검

점검 항목	점 검 내 용	점 검 주 기		
		수시	주	월
전 화 설 비	1. 습기 및 청소상태 확인 2. 접속 및 부식상태 확인 3. 접지 확인			○ ○ ○
방 송 설 비	1. 습기 및 청소상태 확인 2. 앰프 및 스피커 동작 확인 3. 접지 확인			○ ○ ○

(4) 기계설비 점검

점검 항목	점 검 내 용	점 검 주 기		
		수시	주	월
보일러	1. 사용압력의 점검 2. 안전변의 기능점검 3. 수위측정 장치의 기능점검 4. 자동제어장치의 기능점검과 조정 5. 댐퍼의 기능 점검 6. 보일러 외부 청소 7. 연소실 내부의 이상유무 점검 8. 부속기기의 손상, 부식여부 점검	○ ○ ○ ○ ○	○	○ ○ ○

점검 항목	점 검 내 용	점 검 주 기		
		수시	주	월
보일러	9. 급수장치의 기능 점검 10. 외기 온도에 따른 보일러 및 주변장비의 작동여부 확인 11. 온수보일러의 야간 운전설정 기능 점검	○ ○ ○		
오 일 버 너	1. 유량조정밸브의 기능 점검 2. 연료의 온도 점검 조정 3. 버너노즐, 에어노즐의 카본 부착상태 점검 4. 공기압력조절기, 저수위 스위치의 기능 점검 5. 착화 장치의 기능 점검	○ ○ ○ ○ ○		
연 료 탱 크 및 서비 스 탱 크	1. 탱크와 배관계통의 누유여부 점검 2. 오일스트레너 점검 3. 유량계의 기능 점검 4. 기어펌프의 기능 점검 5. 탱크내의 수분유무 점검	○	○ ○	○ ○
연도및 연 돌	1. 손상유무의 점검 2. 연돌하부의 집수여부 점검 3. 재, 먼지의 퇴적여부 점검			○ ○ ○
열 교 환 기 해 더 탱 크	1. 수온, 압력, 증기압의 점검 2. 손상, 누수여부 점검	○	○	
냉 동 기 (터보식, 왕복동식, 흡수식), 냉온수기	1. 냉매회수장치의 기능 점검 2. 추기회수장치의 기능 점검 3. 냉수, 냉각수 순환계통의 점검 4. 냉매펌프, 흡수펌프, 재생펌프 등 각종 펌프 점검 5. 자동 제어장치의 기능 점검 및 조정 6. 각 계기의 지시치 상태확인 7. 냉매 누설여부 검사 8. 유압 점검 9. 유량의 적정여부 점검 10. 축수온도의 적정여부 점검 11. 증발압력, 응축압력의 적정여부 점검 12. 냉온수 및 냉각수 출입구의 온도 측정 13. 부속기기의 손상, 부식여부 점검	○ ○ ○ ○ ○ ○ ○ ○ ○ ○ ○ ○	○	○ ○ ○ ○
쿨 링 타 워	1. 냉각탑 수조내의 오염, 부식여부 점검 2. 송풍기의 기능 확인(전격전류 및 정상운전) 3. 프로펠러 등의 손상, 부식여부 점검 4. 보급수 후릿트 밸브 동작상태 점검 5. 냉각탑 수조 내의 냉각수 배수 여부 확인	○ ○		○ ○ ○

점검 항목	점검 내 용	점검 주기		
		수시	주	월
공 기 조 화 장 치	1. 에어필터의 오염부착물, 파손등의 점검 2. 케이싱의 조립부분, 보온시설의 파손 여부 점검 3. 급기구, 배기구의 오손상태 점검 4. 자동제어장치의 기능 점검 5. 공조기 내부 및 닥트 내부의 오손상태 점검 6. 각종 자동밸브의 기능 점검 7. 외기인입댐퍼 및 배기댐퍼의 완전 닫힘 상태 확인	○		○ ○ ○ ○ ○ ○
송풍기 · 배풍기	1. 전동기의 이상유무 점검 2. 정상운전 여부 확인(모터 전류 측정) 3. 진동, 소음유무, 볼트의 이완여부 점검	○ ○		○
팬 코 일 송 풍 기	1. 송풍기의 소음, 진동, 기능의 점검 2. 냉온수 코일의 외부 점검 3. 드레인 파이프의 상태 점검 4. 에어 필터의 오손상태 점검		○	○ ○ ○
방열기	1. 주위 배관 누수 점검 2. 자동공기변 작동상태 점검			○ ○
에어콘	1. 실외기 팬 보양상태 및 응축수 배수상태 확인	○		
온 수 저 장 탱 크	1. 물의 온도, 압력, 증기압 등의 점검 2. 부속 온수순환 펌프의 압력전류 점검 3. 손상, 누수상태 점검	○ ○	○	
환풍기	1. 화장실 환풍기 외기 차단그릴의 작동 여부 및 완전 닫힘 상태 확인	○		
위 생 기 구	1. 균열, 파손, 취부상태의 이완여부 점검 2. 밸브 및 접합부 등의 누수여부 점검 3. 배수상태의 점검		○ ○ ○	
급 · 배수관	1. 누수점검 2. 배수상태의 점검			○ ○
시 수 탱 크 및 고 가 수 조	1. 자동급수장치 동작상태 점검 2. 불탐의 동작상태 점검			○ ○
동 력 펌프류	1. 압력, 전류치 및 동작상태 확인 2. 소음, 진동상태 점검 3. 푸트밸브의 기능 확인 4. 그랜드패킹의 누수상태 점검 5. 주유(버티칼타입의 경우는 수시) 6. 자동제어장치의 점검 7. 카프링의 조립상태 점검		○ ○	○ ○ ○ ○ ○ ○

점검 항목	점 검 내 용	점 검 주 기		
		수시	주	월
정화조	1. 송풍기, 배풍기 동작상태 확인 2. 스크린의 퇴적물 부착 확인 3. 자동 배수장치 확인 4. 곤충 발생상태 점검 5. 소독조의약품 점검 6. 각종 기기 및 동력장치 작동상태 점검	○ ○ ○	○	○ ○

◎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행정예규 제1091호 2016. 11. 24. 결재)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가정보호·아동보호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 ① 가정법원은 가정보호사건·피해자보호명령사건·아동보호사건·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을 담당하는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 소속 판사들과 보호관찰소,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수탁기관(「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1항제6호·제7호·제8호 기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제6호·제7호·제8호 기관, 제47조제1항제4호·제5호 기관), 기타 유관기관 등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보호처분·보호명령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가정보호·아동보호협의회(다음부터 ‘협의회’라고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협의회는 가정법원장 또는 수석부장판사,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 소속 담당 판사·조사관, 보호관찰소의 장, 보호관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아동복지법」 제13조제1항의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수탁기관의 장, 검사, 경찰공무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 진단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가정법원의 사정에 따라 그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 ③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 보호관찰소, 아동보호전문기관, 수탁기관 등에 각 간사를 둘 수 있다.
- ④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가정법원 본원 또는 지원에서 개최한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법원 내규로 가정보호사건·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집행에 관한 가정보호협의회와 아동보호사건·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집행에 관한 아동보호협의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때, 가정보호협의회는 가정보호사건·피해자보호명령사건과 관련된 제2항의 구성원들로, 아동보호협의회는 아동보호사건·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과 관련된 제2항의 구성원들로 각 구성하고, 가정보호협의회와 아동보호협의회의 각 운영에 관하여는 제3항, 제4항의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신 설〉

개 정 안

제6조의2(가정보호·아동보호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가정법원은 가정보호사건·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아동보호사건·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을 담당하는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 소속 판사들과 보호관찰소,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수탁기관(「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1항제6호·제7호·제8호 기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제6호·제7호·제8호 기관, 제47조제1항제4호·제5호 기관), 기타 유관기관 등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보호처분·보호명령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가정보호·아동보호협의회(다음부터 ‘협의회’라고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가정법원장 또는 수석부장판사,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 소속 담당 판사·조사관, 보호관찰소의 장, 보호관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아동복지법」 제13조제1항의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수탁기관의 장, 검사, 경찰공무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 진단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가정법원의 사정에 따라 그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 보호관찰소, 아동보호전문기관, 수탁기관 등에 각 간사를 둘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 ④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가정법원 본원 또는 지원에서 개최한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법원 내규로 가정보호사건·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집행에 관한 가정보호협의회와 아동보호사건·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집행에 관한 아동보호협의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때, 가정보호협의회는 가정보호사건·피해자보호명령사건과 관련된 제2항의 구성원들로, 아동보호협의회는 아동보호사건·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과 관련된 제2항의 구성원들로 각 구성하고, 가정보호협의회와 아동보호협의회의 각 운영에 관하여는 제3항, 제4항의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092호 2016. 11. 29. 결재)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을“(경조사의 통지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 및 제10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6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4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 ① 행동강령 제14조의 신고대상이 되는 외부강의는 대학 등 교육기관 등을 포함한다.
- ② 동일한 장소에서 연속하여 이루어지는 외부강의 등은 1회로 간주한다.
- ③ 행동강령 제14조제1항의 신고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 ④ 신고대상에 해당되어 신고를 한 후 강의횟수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강의 등에 대해서만 수시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신고대상이 예측 가능한 경우에는 일괄 신고 할 수 있다.
- ⑤ 행동강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외부강의·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별표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신고제외 대상)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강의·회의등의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원행정처 및 각급 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공청회, 토론회에 참석하는 경우
2.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
3.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그밖에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위한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강의하는 경우
4. 신문, 방송 등 언론기관이 주최하는 외부강의·회의등으로서 법원의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경우

개 정 안

〈삭 제〉

〈삭 제〉

현 행

제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 ① (생 략)
- ②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행동강령 제16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조사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5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 ① 행동강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수한 행동강령책임관은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 등은 폐기
 2.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물품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부
 4.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
-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를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연락 가능한 제공자에게 금품등의 처리 경위, 내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행동강령 제20조제1항의 반환비용 청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개 정 안

제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 ① (현행과 같음)
- 〈삭 제〉

〈삭 제〉

현 행

제10조(행동강령책임관)

- ① (생 략)
- ② 행동강령책임관이 법관 및 법원공무원으로부터 인수한 금품 등을 국고귀속 또는 폐기한 경우 그 취지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금품 등 접수·처리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생 략)

개 정 안

제10조(행동강령책임관)

- ① (현행과 같음)
- 〈삭 제〉
- ③ (현행과 같음)

◎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093호 2016. 11. 30. 결재)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 포함), 별정직공무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 중 “15~25시간”을 “15~35시간”으로, “최소 4시간”을 “최소 3시간”으로, “가급적 오전, 오후 단위”를 “가급적 오전, 오후 반일(4시간 단위)”로 한다.

제13조 중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 포함), 별정직공무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인력운영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간제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정기인사 전출희망원 제출시기가 아니더라도 시간제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 중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 개시 당시 만 3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로 한다.

제26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 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한다.

제26조제5항 중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 포함), 별정직공무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적용범위) 시간제 근무는 <u>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u> 게 적용된다.	제9조(적용범위) -----일반직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 포함), 별정직공무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
제11조(시간제근무 시간) 시간제근무시간은 1주당 <u>15~25시간</u> 의 범위에서 시간단위로 정하되, 1일 근무시간은 <u>최소 4시간</u> <u>이상</u>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함)으로 하 며,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u>가급적 오전, 오후</u> <u>단위로 지정한다.</u>	제11조(시간제근무 시간) ----- 15~35시간----- -----,-----최소 3시간 이상 ----- ---,-----가급적 오전, 오후 반일 (4시간) 단위-----.
제13조(신청자격) <u>일반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은 누구나 시간제근</u> <u>무를 신청할 수 있다.</u> 단,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인사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제71조제2항제4호, 같은 항 제5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시간제 근무를 허가할 수 있다.	제13조(신청자격) <u>일반직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 포함), 별정직공</u> <u>무원과 전문임기제공무원-----</u> ----- ----- ----- -----.
제14조(신청시기, 방식 등) 시간제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매년 정기인사 전출희망원 제출시까지 신청서를 소속기관 인사 부서를 통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시간제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4조(신청시기, 방식 등) ----- ----- ----- -----. 다만, 임용권자가 인력 운영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간제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정기인사 전출희망원 제출시기가 아니더라도 시간제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현 행

제26조(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

- ① 법관이 규칙 제68조의6제2항 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이하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라 함)하는 경우, 같은 항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유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 개시 당시 만 3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를 말한다.
- ②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 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되, 단축근무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녀의 나이가 만 3세를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기간을 6개월로 정하여 지정한다. (단서 생략)
- ③ · ④ (생 략)
- ⑤ 기타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에 관하여는,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시간제근무 시간, 유형,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 보수, 복무(초과근무에 대한 부분 제외), 지정 해제 및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 정 안

제26조(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

- ①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 ②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 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한다. (단서 현행과 같음)
- ③ · ④ (현행과 같음)
- ⑤ -----, 일반직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 포함), 별정직공무원과 전문임기제공무원-----.



신법령 목록 (2016. 11. 16 ~ 11. 30.)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법률】				
법률제14276호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16. 11. 22	18890 (그2)	2
【조약】				
조약제2317호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2016. 11. 18	18888	3
조약제2318호	대한민국과 세르비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 과세 방지를 위한 협약	2016. 11. 24	18892	5
조약제2319호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위기관리 활동 참여를 위한 기본협정	2016. 11. 25	18893	4
조약제2320호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2016. 11. 29	18895	5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7589호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6. 11. 22	18890	4
대통령령제27590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
대통령령제27591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
대통령령제27592호	정부 표창 규정 전부개정령	"	"	9
대통령령제27593호	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2
대통령령제27594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6
대통령령제27595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39
대통령령제27596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0
대통령령제27597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3
대통령령제27598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4
대통령령제27599호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5
대통령령제27600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7
대통령령제27601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8

대통령령제27602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6. 11. 22	18890	50
대통령령제27603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3
대통령령제27604호	한국해운조합법시행령 일부개정령	"	"	59
대통령령제27605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0
대통령령제27606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2
대통령령제27607호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령	"	"	64
대통령령제27608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	"	"	67
대통령령제27609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1
대통령령제27610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3
대통령령제27611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6. 11. 29	18895	18
대통령령제27612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9
대통령령제27613호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2
대통령령제27614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3
대통령령제27615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4
대통령령제27616호	치료감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6
대통령령제27617호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31
대통령령제27618호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5
대통령령제27619호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8
대통령령제27620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1
대통령령제27621호	지방회계법 시행령	"	"	64
대통령령제27622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3
대통령령제27623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8
대통령령제27624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9
대통령령제2762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90
대통령령제27626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1
대통령령제27627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3
대통령령제27628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9

대통령령제27629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6. 11. 29	18895	101
대통령령제27630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2
대통령령제27631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103
대통령령제27632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7
대통령령제27633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3
대통령령제27634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6
대통령령제27635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9
대통령령제27636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	"	128
대통령령제27637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32
대통령령제27638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54
대통령령제27639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55
대통령령제27640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57
대통령령제27641호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	159
대통령령제27642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70
대통령령제27643호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	"	173
대통령령제2764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74
대통령령제27645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76
대통령령제27646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77
대통령령제27647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	"	178
대통령령제27648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6. 11. 30	18896 (그2)	2
대통령령제27633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정정	"	"	2

【총리령】

총리령제1249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2016. 11. 28	18894	4
총리령제1333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	2016. 11. 30	18896	4

총리령제1334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6. 11. 30	18896	5
총리령제1335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

【부령】

환경부령제679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6. 11. 17	18887	4
고용노동부령제170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7
산업통상자원부령제223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6. 11. 18	18888	11
행정자치부령제84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6. 11. 22	18890	74
행정자치부령제85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5
고용노동부령제17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6. 11. 23	18891	4
보건복지부령제445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6. 11. 24	18892	39
국토교통부령제373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6. 11. 25	18893	19
농림축산식품부령제225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6. 11. 28	18894	5
해양수산부령제208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
해양수산부령제206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7
국방부령제904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6. 11. 29	18895	182
국방부령제905호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86
국방부령제906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88
국방부령제907호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90
국방부령제908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14
행정자치부령제86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23
행정자치부령제87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24
문화체육관광부령제277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49
보건복지부령제446호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57
보건복지부령제447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59
해양수산부령제207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02
교육부령제111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6. 11. 30	18896	10

국방부령제909호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6. 11. 30	18896	17
국방부령제910호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90
농림축산식품부령제226호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06
산업통상자원부령제224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06
산업통상자원부령제225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110
보건복지부령제448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	"	117
보건복지부령제449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21
환경부령제680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24
여성가족부령제101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33
여성가족부령제10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36
해양수산부령제204호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	142
해양수산부령제205호	한국해운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48

인 사

인사발령 법 제131호

2016. 11. 18.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복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지희(李知姬)	복직을 명함. 3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16. 11. 21.자) 끝.			

인사발령 법 제134호

2016. 11. 2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임 명			
가. 지방법원 판사		김도영(金到煥)	판사에 임함. 7호봉을 급함
		김보현(金甫賢)	판사에 임함. 4호봉을 급함
		서지원(徐智源)	판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이은상(李垠尙)	"
		이지혜(李智慧)	판사에 임함. 4호봉을 급함
		전흔자(田欣子)	판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정선희(鄭善姬)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조희성(趙禧成)	판사에 임함. 7호봉을 급함
(2016. 12. 1.자)			

2. 교육명령

가. 지방법원 판사

	김도영(金到煥)	2016. 12. 1.부터 2017. 2. 15.까지 2016 년도 일반 법조경력 신임법관연수 피교육 을 명함
	김보현(金甫賢)	"
	서지원(徐智源)	"
	이은상(李垠尙)	"
	이지혜(李智慧)	"
	전흔자(田欣子)	"
	정선희(鄭善姬)	"
	조희성(趙禧成)	"

끝.

인사발령 법 제135호

2016. 11. 2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임 명(연 임)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성복(李誠馥)	판사에 연임함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태규(金泰圭)	"
	"	허용구(許容九)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조현철(趙顯哲)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전국진(全國鎭)	"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이영철(李榮喆)	판사에 연임함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장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장판사)	장낙원(張樂元)	"
나.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현석(李玼碩)	판사에 연임함
다.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회일(鄭會逸)	판사에 연임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김정곤(金正坤)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허경무(許京茂)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곽정환(郭楨漢)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	김대현(金大鉉)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유량(金유량)	"

(2016. 12. 4.자) 끝.

인사발령 법 제136호

2016. 11. 21.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전 보			
가. 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김종근(金鍾根)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에 포함

(2016. 12. 17.자)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2.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태환(金泰桓)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6. 12. 22.부터 2017. 2. 17.까지 휴직을 명함
	"	유현영(兪賢英)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6. 12. 22.부터 2017. 12. 21.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정현식(鄭玄植)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6. 12. 22.부터 2017. 2. 24.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남수진(南秀珍)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6. 12. 19.부터 2017. 2. 17.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양상익(梁相翊)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6. 12. 22.부터 2017. 1. 21.까지 휴직을 명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박재순(朴宰淳)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6. 12. 22.부터 2017. 2. 19.까지 휴직을 명함
	"	임태연(林兌妍)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6. 12. 20.부터 2018. 2. 21.까지 휴직을 명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김세준(金世竣)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6. 12. 5.부터 2017. 12. 4.까지 휴직을 명함
	대전지방법원 판사	안지연(安芝演)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6. 12. 4.부터 2017. 2. 5.까지 휴직을 명함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예림(李璉林)	2016. 12. 29.부터 2017. 2. 17.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3. 복직			
가. 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허서윤(許瑞允)	복직을 명함. 3호봉을 급함.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16. 12. 14.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김진영(金珍瑛)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에 포함
			(2016. 12. 17.자)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김슬기(金슬기)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16. 12. 28.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지연(金志娟)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16. 12. 30.자)
	수원지방법원 판사	권순현(權純賢)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16. 12. 31.자)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4. 복귀			
가. 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통일부)	이봉수(李奉守)	복귀를 명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에 포함 (2016. 12. 20.자) 끝.

인사발령 법 제137호

2016. 11. 21.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사법연구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문혜정(文惠貞)	2016. 12. 21.부터 2017. 1. 17.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창렬(朴昌烈)	2016. 12. 8.부터 2017. 1. 4.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행순(金幸順)	2016. 12. 24.부터 2017. 1. 20.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영남(崔永男)	2016. 12. 26.부터 2017. 1. 13.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끝.

 공 고

법관 명예퇴직수당 지급계획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법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2. 15.

법 원 행 정 처 장

1. 수당지급 대상자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관.

2. 수당지급 대상인원 : ○○명(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대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음).

3. 수당지급 신청기간 : 2017. 1. 5. ~ 2017. 2. 1.

4. 명예퇴직 예정일 : 2017. 2. 20.

5. 수당지급 방법 등

가. 수당은 소속기관의 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기관의 장이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지급할 수 있음.

나. 소속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일에 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6. 기타사항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업무처리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 11월 신착 법률·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11월분 법률도서(539책), 일반도서(120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129종)이 입수되어 다음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 법률도서

[법률]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NU Law Review v.11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남대학교	2016	
가천법학 v.9-3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慶熙法學 v.51-3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慶熙大學校	2016	
高麗法學 v.82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東北亞法研究 v.10-2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6	
東亞法學 v.72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東亞大學校 出版部	2016	
법과 기업연구 v.6-2 /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무연구 v.6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2016	
법철학연구 v.19-2 / 한국법철학회	세창출판사	2016	
法學論集 v.21-1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研究所	2016	
法學論叢 v.36-3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全南大學校 法學研究所	2016	
法學論叢 v.33-3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漢陽大學校	2016	
法學研究 v.19-3 / 인하대학교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研究 v.25-1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研究 v.25-2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研究 v.25-3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研究 v.25-4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研究 v.26-1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法學研究 v.26-2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研究 v.26-3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成律 v.10 / 성균관대학교 成律 편집위원회	성균관대학교 成律 편집위원회	2016	
安岩法學 v.51 / 안암법학회	무지개출판사	2016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백서 / 법제처	법제처	2016	
외법논집 v.40-3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이화젠더법학 v.8-2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6	
저스티스 v.156 / 한국법학원	韓國法學院	2016	
判例研究 v.30-1 / 서울지방법원 변호사회	서울地方辯護士會	2016	
홍익법학 v.17-3 / 홍익대학교	弘益大學校	2016	
法と哲學. 第2號 / 井上達夫	信山社	2016	
法令全書 v.1952-26-25 /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6	
法令全書 v.1952-26-26 /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6	
法學新報 v.123-1 / 中央大學法學會	有斐閣	2016	
法學新報 v.123-2 / 中央大學法學會	有斐閣	2016	
法學研究 v.52-2 / 北海學園大學法學會	北海學園大學法學會	2016	
法學研究 v.2016-1 / 慶應義塾大學法學研究會	慶應義塾大學法學研究會	2016	
法學研究 v.2016-2 / 慶應義塾大學法學研究會	慶應義塾大學法學研究會	2016	
法學研究 v.2016-3 / 慶應義塾大學法學研究會	慶應義塾大學法學研究會	2016	
新司法試験の問題と解説 v.2016 / 日本評論社	日本評論社	2016	
神戸法學雜誌 v.65-4 / 神戸法學會	神戸法學雜誌	2016	
神戸法學雜誌 v.66-1 / 神戸法學會	神戸法學雜誌	2016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1008: 地方予算と地方税の見方 : 通俗財政經濟大系 第5編 / 森田久	信山社出版	2016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1009: 地方制度之栞 〈第83版〉 / 湯沢睦雄	信山社出版	2016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1121: 民法と社會主義・思想小史 / 岡村司	信山社出版	2016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1122: 親族法講義要領 / 岡村司	信山社出版	2016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1123: 改正民法正解: 上卷・下卷 / 林金次郎	信山社出版	2016	
早稻田法學 v.91-2 / 早稻田大學法學會	早稻田大學法學會	201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早稻田法學 v.91-3 / 早稻田大學法學會	早稻田大學法學會	2016	
早稻田法學 v.91-4 / 早稻田大學法學會	早稻田大學法學會	2016	
判例時報總索引 v.19 / 判例時報社	判例時報社	2016	
判例時報總索引 v.2015 / 判例時報社	判例時報社	2016	
判例回顧と展望 v.2015 / 日本評論社	日本評論社	2016	
American law / Jun, Jang-Hean	형설출판사	2016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v.24-3 /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2016	
Cornell law review v.101-6 / Cornell Law School	The Cornell Law Association	2016	
Derecho y Metodología Jurídicos: (Esbozos de Filosofía Jurídica) / Aparicio Pérez, Antonio	Tirant lo Blanch	2015	
(The) law quarterly review v.132-4	Sweet & Maxwell	2016	
(Los) Lenguajes de la Jurisprudencia, la Sociología y la Ética / Schmill Ordoñez, Ulises	Tirant lo Blanch	2016	
Marginalias jurídicas en el "Smithfield Decretals" / Calvo González, José	Tirant Humanidades	2016	
TEL-AVIV University law review v.38-3	Tel Aviv University	2016	
TEL-AVIV University law review v.39-1	Tel Aviv University	2016	
TEL-AVIV University law review v.39-2	Tel Aviv University	2016	
Teoría Práctica del Derecho / Carretero Sánchez, Santiago	Tirant lo Blanch	2015	
Tulane law review v.90-5 / Tulane Law Review Association	Tulane University School of Law	2016	
UBC Law Review v.49-2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2016	

[법제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アメリカ法 v.2015-2 / 日米法學會	日米法學會	2016	
法制史研究 v.65 / 法制史學會	創文社	2016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IT와 法 研究 v.13 / 경북대학교	IT와 법센터	2016	
기업법무 리뷰 v.9-1 / 경희법학연구소	경희대학교	2016	
労働法研究 v.41 /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6	
노동정책연구 v.2016-3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16	
농촌 융복합시설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분석 /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20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설: 재개발 재건축 상 / 맹신균	법률&출판	2016	
독일의 자산관리법제 연구: 개인금융자산을 중심으로 / 장원규	한국법제연구원	2016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 윤계형	한국법제연구원	2016	
유럽연합 환경법 / Krämer, Ludwig	考試界社	2016	
租稅法研究 v.22-2 / 세법연구회	세경사	2016	
지식재산연구 v.11-3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6	
Fintechとは何か: 金融サービスの民主化をもたらすイノベーション / 隈本正寛	金融行政事情研究会	2016	
(Q&A) 建築物省エネ法のポイント: 2016 / 建築物省エネ法研究会	新日本法規出版	2016	
(Q&A) 商標・意匠・不正競争防止の知識100問 / 清水節	日本加除出版	2016	
(はじめて学ぶ) 独占禁止法 / 菅久修一	商事法務	2016	
(グレーゾーンから考える) 相続・贈与税の土地適正評価の実務 / 風岡範哉	清文社	2016	
(ケースブック) 不動産登記のための税務: 売買・贈与・ 相続・貸借から成年後見・財産管理まで / 林勝博	民事法研究会	2016	
(ニューレクチャー) 労働法 / 有田謙司	成文堂	2016	
建築紛争の基礎知識 / 竹川忠芳	大成出版社	2016	
景品表示法ガイドブック: 平成28年4月 改訂版 / 公正取引協會	公正取引協會	2016	
空法 v.57 / 日本空法學會	勁草書房	2016	
交通事故診療と損害賠償実務の交錯 / 交通事故賠償研究会	創耕舎	2016	
(企業実務家のための実践) 特許法 / 外川英明	中央經濟社	2016	
農地法読本 / 宮崎直己	大成出版社	2016	
都市と環境の公法学: 磯部力先生古稀記念論文集 / 磯部力先生古稀記念論文集刊行委員会	勁草書房	201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都市計画法の探検 / 久末弥生	法律文化社	2016	
獨占禁止法の法律相談 / 小林覺	青林書院	2016	
獨占禁止法入門: 基礎知識の修得から実務での活用まで / 酒井紀子	民事法研究會	2016	
妄想の医学と法学 / 村松太郎	中外医学社	2016	
(民法的思考による) 国際税務ケースブック / 小寺壽成	法令出版	2016	
法人税法: 理論と計算 / 成松洋一	税務経理協會	2016	
法人税法入門講義 / 金子友裕	中央經濟社	2016	
(別冊) パテント v.69-4 / 日本弁理士會	日本弁理士會	2016	
(別冊) パテント v.69-5 / 日本弁理士會	日本弁理士會	2016	
不正競争の法律相談. I / 小野昌延	青林書院	2016	
不正競争の法律相談. II / 小野昌延	青林書院	2016	
社告好事例集: 謝罪・お詫び広告の手引書 / 商事法務(株)	商事法務	2016	
社會保障判例百選 / 有斐閣	有斐閣	2016	
社会保険の事業主責任と年金の課題/日韓比較社会保険法 / 日本社會保障法學會	日本社會保障法學會	2016	
社会福祉法人の不正防止・内部統制・監査 / 全国社会福祉法人会計研究会	清文社	2016	
社会福祉法人の運営と財務 / 古田清和	清文社	2016	
(詳解)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 厚生労働省健康局結核感染症課	中央法規出版	2016	
税務判例に強くなる本: 税務調査で負けないリーガルマインドの育て方 / 高橋貴美子	中央經濟社	2016	
税法學 v.2016-1 / 日本税法學會	税法研究所	2016	
税制参考資料集, 平成28年 4月, 平成28年度版 / 日本租税研究協會	日本租税研究協會	2016	
所得税法要説 / 山内ススム	税務経理協會	2016	
消費者裁判手続特例法 / 伊藤眞	商事法務	2016	
消費者行政法: 安全・取引・表示・個人情報保護分野における執行の実務 / 大島義則	勁草書房	2016	
食品表示法ガイドブック: 判断に迷わない新しい食品表示基準のポイント / 森田満樹	ぎょうせい	2016	
(新しい) 社会福祉法人制度の運営実務 / 田中正明	T K C 出版	201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新外国証券関係法令集: イギリス 2012年金融サービ / 日本証券経済研究所	日本証券経済研究所	2016	
(実務家必携実務) 借地権課税 / 梶山清児	大藏財務協會	2016	
営業秘密保護の手引き / 商事法務(株)	商事法務(株)	2016	
医事法講義 / 米村滋人	日本評論社	2016	
日本教育法學會年報: v.45 / 日本教育法學會	有斐閣	2016	
日本労働法學會誌 v.127 / 日本労働法學會	總合労働研究所	2016	
(入門図解最新) IT企業の法務対策: 事業者必携 / 梅原ゆかり	三修社	2016	
裁判例に見る「非正規公務員」の現状と課題: 雇止め・処遇の問題を中心に / 東京弁護士会労働法制特別委員会公務員労働法制研究部会	法律情報出版	2016	
著作権研究 v.42 / 著作権法學會	有斐閣	2016	
情報ネットワーク・ローレビュー v.14 / 情報ネットワーク法學會	商事法務研究會	2016	
(精選) 労働判例集: 経営側弁護士による 第6集 / 労働新聞社	労働新聞社	2016	
租税法における財産評価の今日的理論問題 / 日本税務研究センター	日本税務研究センタ	2016	
租税法研究 v.44 / 租税法學會	有斐閣	2016	
租税研究 v.2016-4 / 日本租税研究協會	日本租税研究協會	2016	
租税研究 v.2016-5 / 日本租税研究協會	日本租税研究協會	2016	
租税研究 v.2016-6 / 日本租税研究協會	日本租税研究協會	2016	
租税研究 v.2016-7 / 日本租税研究協會	日本租税研究協會	2016	
租税研究 v.2016-8 / 日本租税研究協會	日本租税研究協會	2016	
租税條約關係法規集: I. 平成28年版 / 納税協會連合會	納税協會連合會	2016	
租税條約關係法規集: II. 平成28年版 / 納税協會連合會	納税協會連合會	2016	
租税判例百選 / 有斐閣	有斐閣	2016	
中国商標法と実務: 第三次改正対応〈詳細版〉 / 馬彦華	經濟産業調査會	2016	
中国知財戦略: イノベーションの実態と知財プラクティス / 山田勇毅	白桃書房	2016	
知的財産法政策學研究 v.48 / 北海道大學情報法政策學研究センター 北海道大學大學院法學研究科21世紀COEプログラム, 新世代知的財産法政策學の國際據点形成事務局 新世代法政策學	北海道大學	201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最新)醫事關連法の完全知識: これだけは知っておきたい医療事務86法: 2016年版 / 安藤秀雄	醫學通信社	2016	
(逐条解説) 2015年金融商品取引法改正 / 田原泰雅	商事法務	2016	
(逐條解説)下水道法 / 下水道法令研究會	ぎょうせい	2016	
判例から学ぶ税理士損害賠償責任: 相続税編 - 税目別解説 / 内田久美子	大藏財務協會	2016	
学校を取り巻く法規・制度の最新動向 / 坂田仰	教育開発研究所	2016	
学校事故の法律相談 / 古笛恵子	青林書院	2016	
憲法改正の比較政治学 / 駒村圭吾	弘文堂	2016	
化学物質総合管理法制: 官主導に捉われた半鎖国状態をただす方策 / 星川欣孝	日本評論社	2016	
環境去BASIC / 大塚直	有斐閣	2016	
Acceso a la Vivienda y Contratación / Parra Lucán, María de los Angeles	Tirant lo Blanch	2015	
Analysis of the impact of the patent system on the industry: Through historical examples / Philippne, Alexandre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6	
Animales y Derecho / Favre, David S	Tirant lo Blanch	2015	
Aproximación Jurídica y Económica al Big Data / Puyol Montero, Javier	Tirant lo Blanch	2015	
(A) Study on the issues associated with software patent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russian federation / Rejepov, Levon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6	
Bienes en Común / Nasarre Aznar, Sergio	Tirant lo Blanch	2015	
Bilateral and regional trade agreements: Commentary and analysis / Lester, Simon	Cambridge university	2015	
Ciudadanía e Infancias. Los Derechos de los Niños en el Contexto de la Protección / Ramiro, Julia	Tirant lo Blanch	2015	
Code du travail 2016 / France	LexisNexis	2015	
Conceptos Fundamentales de Inteligencia / Diaz Fernández, Antonio M	Tirant lo Blanch	2016	
Concepto y Régimen Jurídico de los Medicamentos: su Distinción de Otros Productos para el Cuidado de la Salud / Vida Fernández, José	Tirant lo Blanch	2015	
Conciliación y Seguridad Social: (La) Brecha de Género en el Sistema de Pensiones / Grau Pineda, María del Carmen	Tirant lo Blanch	201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ontrol de Transparencia y Contratación Bancaria: Régimen de Aplicación y Doctrina Jurisprudencial Aplicable / Orduña Moreno, Francisco Javier	Tirant lo Blanch	2016	
Copyright law of Ethiopia in light of the practice in South Korea: Balabancing competing interests for development / Kerorsa, Lubo Teferi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6	
Crisis, Derechos Sociales e Igualdad / Nogueira López, Alba	Tirant lo Blanch	2015	
Crisis Económica y Medidas Ante el Desempleo / Remedios Roqueta Buj	Tirant lo Blanch	2015	
Curso Básico de Derecho del Trabajo: Para Titulaciones no Jurídicas / Ramírez Martínez, Juan Manuel	Tirant lo Blanch	2015	
Curso de Prevención de Riesgos Laborales / López Gandía, Juan	Tirant lo Blanch	2016	
Curso de Seguridad Social / Blasco Lahoz, JoséFrancisco	Tirant lo Blanch	2015	
Denominaciones de Origen e Indicaciones Geográficas / Montero García-Noblejas, María del Pilar	Tirant lo Blanch	2016	
Denuncia y Ultraactividad del Convenio Colectivo / Cámara Botia, Alberto	Tirant lo Blanch	2015	
Derecho de la seguridad social / Roqueta Buj, Remedios García Ortega, Jesús	Tirant lo Blanch	2015	
Derecho urbanístico: Guía Teórico-Práctica / Quintana López, Tomás	Tirant lo Blanch	2015	
Derecho y Ciencia / Cossío Díaz, José Ramón	Tirant lo Blanch	2015	
Descentralización Productiva y Prevención de Riesgos Laborales en las Obras de Construcción / Illueca Ballester, Héctor	Tirant lo Blanch	2015	
Dirección, Organización del Gobierno y Propiedad de la Empresa Familiar: un Análisis Comparado desde la Economía y el Derecho / Camisón Zornoza, César	Tirant lo Blanch	2015	
(El) Accidente de Trabajo y la Enfermedad Profesional / Pérez Alonso, María Antonia	Tirant lo Blanch	2015	
(El) Derecho Ante la Innovación y los Riesgos Derivados del Cambio Climático / Parejo Alfonso, Luciano	Tirant lo Blanch	201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El) Derecho de la Competencia / Campuzano Laguillo, Ana Belén	Tirant lo Blanch	2015	
(El) Impacto de la Negociación Colectiva Sobre la Segmentación Laboral: Causa Determinante e Instrumento de Contención / Cruz Villalón, Jesús	Tirant lo Blanch	2015	
(El) Impuesto Sobre Sucesiones y Donaciones: (Aspectos Civiles y Tributarios) / Martín Fernández, F. Javier	Tirant lo Blanch	2015	
(El) Régimen Jurídico de la Regularización Urbanística / Moreno Linde, Manuel	Tirant lo Blanch	2016	
Estatuto de los Trabajadores / Blasco Pellicer, Ángel	Tirant lo Blanch	2015	
Hacienda Pública y Dimensión Internacional de la Riqueza / Cubero Truyo, Antonio M	Tirant lo Blanch	2015	
Impuesto Sobre la Renta de las Personas Físicas, Impuesto sobre el patrimonio e: Impuesto sobre la renta de los no Residentes: normativa estatal y autonómica 2016 / Pérez Lara, José Manuel	Tirant lo Blanch	2016	
Impuesto Sobre Sociedades: act. a 1 de en. de 2016 / Pla Vall, Ángeles	Tirant lo Blanch	2016	
Investigación, Docencia Universitaria y Derechos de Propiedad Intelectual / Altés Tárrega, Juan A	Tirant lo Blanch	2015	
Jurisprudencia Social a Debate / Sala Franco, Tomás	Tirant lo Blanch	2015	
Kölner Kommentar zum Kartellrecht. Bd. 3: Art. 101–106 AEUV, Gruppenfreistellungsverordnungen / Busche, Jan	Carl Heymanns Verlag	2016	
(La) Compatibilidad del Trabajo con la Protección por Desempleo / Pérez del Prado, Daniel	Tirant lo Blanch	2015	
(La) Inserción Laboral de las Mujeres en Riesgo de Exclusión Social / Rodríguez Escanciano, Susana	Tirant lo Blanch	2015	
(La) Ley General Tributaria y sus Reglamentos de Desarrollo / Pérez Lara, José Manuel	Tirant lo Blanch	2016	
(La) Piratería y Otros Delitos Contra la Seguridad de la Navegación Marítima / López Lorca, Beatriz	Tirant lo Blanch	2015	
(La) Protección Contractual del Consumidor por las Faltas de Conformidad de los Productos / Juárez Torrejón, Ángel	Tirant lo Blanch	201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Protección del Consumidor en dos Espacios de Integración: Europa y América: Una Perspectiva de Derecho Internacional, Europeo y Comparado / Esteban de la Rosa, Fernando	Tirant lo Blanch	2015	
(Las) Cláusulas Abusivas en los Contratos de Préstamo Garantizado con Hipoteca: Negociación Contractual, Desequilibrio Importante y Protección del Consumidor en la Contratación Bancaria / Castillo Martínez, Carolina del Carmen	Tirant lo Blanch	2016	
(La) Sindicación de Bloqueo en Las Sociedades Anónimas / Moreno Utrilla, David	Tirant lo Blanch	2015	
(Las) Medidas Cautelares en los Procedimientos Tributarios / Martínez Muñoz, Yolanda	Tirant lo Blanch	2015	
(Las) Relaciones Laborales Colectivas en América Latina y España / Mangarelli, Cristina	Tirant lo Blanch	2015	
(Las) Relaciones Laborales en las Pequeñas y Medianas Empresas: Problemas Actuales y Perspectivas de Futuro / Jesús R. Mercader Uguina	Tirant lo Blanch	2015	
(Las) Transformaciones de la Televisión Pública Valenciana / Andrés Segovia, Belén	Tirant lo Blanch	2015	
(La) Tutela del Cliente Bancario y las ADR: (La) Institución del Ombudsman: Una Visión Comparada Entre España, Reino Unido y Australia / Blanco García, Ana Isabel	Tirant lo Blanch	2015	
Lecciones de Derecho del Trabajo / Mercader Uguina, Jesús R	Tirant lo Blanch	2015	
Lexisnexis practice guide:Massachusetts workers' compensation / Kohl, Deborah G	LexisNexis	2016	
Ley de Suelo y urbanística supletoria / Quintana López, Tomás	Tirant lo Blanch	2016	
Ley General de la Seguridad Social: concordada con la jurisprudencia de los tribunales Constitucional y Supremo: / Blasco Lahoz, José Francisco	Tirant lo Blanch	2016	
Ley General Tributaria: Ley 58/2003, de 17 de diciembre: (actualizada con las últimas reformas de 2015, junto con sus distintas redacciones) / Pérez Lara, José Manuel	Tirant lo Blanch	2015	
(Los) Gastos Subvencionables / Lillo Jara, José Ramón	Tirant lo Blanch	201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Manual de Derecho de la Prevención de Riesgos Laborales / García, Guillermo González	Tirant lo Blanch	2015	
Manual de Derecho del Trabajo / Molero Manglano, Carlos López Álvarez, M ^a José	Tirant lo Blanch	2015	
Manual de Derecho del Trabajo / García-Perrote Escartín, Ignacio	Tirant lo Blanch	2015	
Manual de Derecho Financiero y Tributario: Parte General / Navarro Faure, Amparo	Tirant lo Blanch	2016	
Manual de Derecho Tributario del Turismo / Cencerrado Millán, Emilio Gallego López, Juan Benito	Tirant lo Blanch	2016	
Manual de propiedad intelectual / Bercovitz Rodríguez-Cano, Rodrigo	Tirant lo Blanch	2015	
Manual práctico de derecho tributario: parte general / Eserverri Martínez, Ernesto	Tirant lo Blanch	2016	
Negociación en la Empresa / Alfonso Mellado, Carlos L	Tirant lo Blanch	2015	
Normas Laborales Básicas / Goerlich Peset, José María	Tirant lo Blanch	2015	
Poder de Control Empresarial, Sistemas Tecnológicos y Derechos Fundamentales de los Trabajadores / Rodríguez Escanciano, Susana	Tirant lo Blanch	2015	
Prevención de Riesgos Laborales en la Policía Local / Carque Vera, José Luis	Tirant lo Blanch	2015	
Reestructuraciones Empresariales y Despidos Colectivos / Sáez Lara, Carmen	Tirant lo Blanch	2015	
Responsabilidad Empresarial / Monterroso Casado, Esther	Tirant lo Blanch	2016	
Sammlung der Entscheidungen des Bundesfinanzhofs v.252 / Germany, Bundesfinanzhofs	Stollfuss Medien	2016	
Tercera Edad y Ayuda a la Dependencia / García-Maestro García, María Josefa	Tirant lo Blanch	2015	
Tributación Comercial: Aspectos Básicos y Aplicación Práctica / Herrero de la Escosura, Patricia	Tirant lo Blanch	2015	
Turismo y Movilidad: Interrelaciones y Nuevas Oportunidades: XVIII Congreso Internacional de Turismo Universidad Empresa / López Olivares, Diego	Tirant lo Blanch	201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Wettbewerbsrecht, Bd.3: Beihilfenrecht/ Sonderbereiche Kommentar zum deutschen und europäischen Kartellrecht / Immenga, Ulrich	C.H.Beck	2016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Dong-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v.15 / Dong-A university	School of law and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university	2016	
Dong-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v.16 / Dong-A university	School of law and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2016	
국제법 동향과 실무 v.42 /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	2016	
미국 우주법제 연구: 상업적우주발사경쟁력법을 중심으로 / 윤인숙	한국법제연구원	2016	
スワップ取引のすべて / 杉本浩一	金融財政事情研究会	2016	
国際法務の技法 / 芦原一郎	中央経済社	2016	
国際法資料集 / 西谷元	日本評論社	2016	
國際私法年報 v.17 / 國際私法學會	信山社	2016	
国際裁判の証拠法論 / 中島啓	信山社出版	2016	
世界法年報 v.35 / 世界法學會	世界法學會	2016	
海賊対処法の研究 / 鶴田順	有信堂高文社	2016	
Acuerdos Marco Internacionales: (De) la Responsabilidad Social Empresarial a la Autonomía Colectiva Transnacional / Correa Carrasco, Manuel	Tirant lo Blanch	2016	
Curso de Derecho Internacional Público / Fernández Tomás, Antonio	Tirant lo Blanch	2015	
Derecho del Comercio Internatacional / Esplugues Mota, Carlos	Tirant lo Blanch	2015	
Derecho Internacional Privado / Esplugues Mota, Carlos	Tirant lo Blanch	201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Derecho Internacional Público: Instrumentos Normativos / Torres Ugena, Nila	Tirant lo Blanch	2015	
Derecho Penal y Derecho Administrativo Sancionador: Garantías y Límites en la Jurisprudencia del TEDH / Díaz Fraile, Francisco	Tirant lo Blanch	2015	
Deuda Pública y Derecho Internacional / Espósito, Carlos D	Tirant lo Blanch	2015	
Diversidad Cultural y Conflictos en la Unión Europea: Implicaciones Jurídico-Políticas / Solanes Corella, Ángeles	Tirant lo Blanch	2016	
(El) Derecho a la Tutela Judicial Efectiva en la Jurisprudencia del Tribunal Europeo de Derechos Humanos / Milione, Ciro	Tirant lo Blanch	2015	
(El) Derecho de Huelga en el Derecho Internacional / Fotinopoulou Basurko, Olga	Tirant lo Blanch	2016	
(El) Derecho Internacional Ante el Conflicto de Colombia / Vacas Fernández, Félix	Tirant lo Blanch	2015	
(El) Tribunal Europeo de Derechos Humanos: Una Visión Desde Dentro: en homenaje al Juez Josep Casadevall / López Guerra, Luis	Tirant lo Blanch	2015	
Instituciones de la Unión Europea / Escobar Hernández, Concepción	Tirant lo Blanch	2015	
(The) international lawyer v.2015-2	ABA	2015	
(La) Orden Europea de Investigación: actos de Investigación, Ilicitud de la Prueba y Cooperación Judicial Transfronteriza / Martínez García, Elena	Tirant lo Blanch	2016	
(La) Situación Jurídica de los Inmigrantes Irregulares en España / Giménez Bachmann, Marc	Tirant lo Blanch	2015	
(La) Unión Europea: Organización y Funcionamiento / Ripoll Navarro, Rafael	Tirant lo Blanch	2015	
Lectures on korean ODA law / Kim, Bongchul	Huine	2016	
Mediación Concursal: (Los) Acuerdos Extrajudiciales de Pago / Aznar Giner, Eduardo	Tirant lo Blanch	2016	
Menores no Acompañados: (Los) Otros Inmigrantes: Cuestiones Jurídicas, Actividades Investigadores y Docentes / Cabedo Mallol, Vicente	Tirant lo Blanch	2015	
Normativa y Jurisprudencia Básica del Derecho de la Unión Europea / Bou Franch, Valentín	Tirant lo Blanch	201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Ordenamiento Jurídico y Sociedades Pluralistas: a Propósito de la Inmigración en la Ciudad de Málaga / Calvo Espiga, Arturo	Tirant lo Blanch	2015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é v.2016-2 / Lagarde, Paul Dalloz	Dalloz	2016	
Revue géné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v.2016-3 / A. Piler P. Fauchille A. Pedone	Pedone	2016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é v.2016-3 / Société de législation comparée	Société de législation comparée	2016	
Sucesiones Internacionales: Comentarios al Reglamento (UE) 650/2012 / Lglesias Buigues, José Luis	Tirant lo Blanch	2015	
Tratamiento Jurídico de los Menores Extranjeros en España: Actualizado con el Contenido del Protocolo Marco de 22 de julio de 2014 / Armenteros León, Miguel	Tirant lo Blanch	2015	
TRIPS and human rights: Patents and access to medicines in the malaysian context / Chong, Yee Leng Daphine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6	
Vulnerabilidad y Democracia en Iberoamérica: Riesgos Tradicionales y Nuevas Amenazas para la paz y la Seguridad / Aznar, Federico	Tirant lo Blanch	2015	
Zeitschrift fur ausländisches öffentliches Recht und Volkerrecht v.76-3	W. Kohlhammer	2016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인권정책·침해구제·차별시정 v.8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6	
인권법평론 v.17 /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16	
なぜ日本型統治システムは疲弊したのか: 憲法学・政治学・行政学からのアプローチ / 縣公一郎	ミネルヴァ書房	2016	
国民国家と憲法 / 石川晃司	三和書籍	201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近代立憲主義と現代国家 / 樋口陽一	勁草書房	2016	
立憲主義と安全保障法制: 同盟戦略に対応するドイツ連邦憲法裁判所の判例法形成 / 松浦一夫	三和書籍	2016	
生存權の困難: フランス革命における近代国家の形成と 公的な扶助 / 波多野敏	勁草書房	2016	
選舉執行經費基準法解説 / 選舉管理研究會	ぎょうせい	2016	
人權への視座: フランスにおける「人權と政治」 論争と日本の行方 / 佐々木允臣	文理閣	2016	
人權法 / 近藤敦	日本評論社	2016	
日本国憲法と共に生きる: 「真理と平和」を求めて / 杉原泰雄	勁草書房	2016	
日本憲法史: 八百年の伝統と日本国憲法 / 小路田泰直	かもがわ出版	2016	
戦後史で読む憲法判例 / 山田隆司	日本評論社	2016	
情報社会の法律 / 北原宗律	創成社	2016	
統治機構の憲法構想 / 大石眞	法律文化社	2016	
憲法9条とわれらが日本: 未来世代へ手渡す / 大澤真幸	筑摩書房	2016	
憲法9条と安保法制: 政府の新たな憲法解釈の検証 / 阪田雅裕	有斐閣	2016	
憲法と民主主義を学びなす: 立憲デモクラシー講座 / 山口二郎	岩波書店	2016	
憲法の地図: 条文と判例から学ぶ / 大島義則	法律文化社	2016	
憲法問題 v.27 / 全國憲法研究會	三省堂	2016	
憲法用語の源泉をよむ / 大林啓吾	三省堂	2016	
憲法: 總論 統治. 1 / 新井誠	日本評論社	2016	
Berkeley journal of gender, law & justice v.31-2 / University of California School of Law	University of California	2016	
Bioderecho, Seguridad y Medioambiente / Sánchez Patrón, José Manuel	Tirant lo Blanch	2015	
Constitucionalismo Crítico: Liber Amicorum Carlos de Cabo Martín / García Herrera, Miguel Ángel	Tirant lo Blanch	2015	
Derechos Sociales y Laborales Frente a la Redefinición del Modelo de Estado / Silva Ardanuy, Francisco Manuel	Tirant lo Blanch	2015	
Dogmática y Práctica de los Derechos Fundamentales / Sánchez González, Santiago	Tirant lo Blanch	201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Educación la Mirada: Documentales para una Enseñanza Crítica de los Derechos Humanos / García Sáez, José Antonio	Tirant lo Blanch	2015	
(El) Apercibimiento: Una Nueva Sanción en Materia de Protección de Datos de Carácter Personal / Marzal Raga, Consuelo de los Reyes	Tirant lo Blanch	2015	
(El) Futuro de los Derechos Humanos / Fernández Ruiz Gálvez, Encarnación	Tirant lo Blanch	2016	
(El) Honor de los Inocentes: y otros límites a la libertad de expresión relacionados con la Administración de Justicia / Ángel Rodríguez	Tirant lo Blanch	2016	
(El) mainstreaming de género en España: hacia un Compromiso Transversal con la Igualdad / Alonso Álvarez, Alba	Tirant lo Blanch	2015	
Entscheid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v.140 / Germany. Bundesverfassungsgericht	J.C.B.Mohr	2016	
Federal trade commission: Privacy law and policy / Hoofnagle, Chris Ja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Feminismos y Procesos Constituyentes / Guamán, Adoración	Tirant lo Blanch	2016	
Innovación y Continuidad en el Modelo Constitucional Boliviano de 2009 / Viciano Pastor, Roberto	Tirant lo Blanch	2016	
Instituciones de Derecho Civil: Derechos Reales, Derecho Registral Inmobiliario / Blasco Gascó, Francisco de P	Tirant lo Blanch	2015	
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ü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KritV) v.99-2 / Albrecht, Peter-Alexis	Nomos	2016	
(La) Protección de los Derechos Constitucionales en la Regulación del Audiovisual / Medina Guerrero, Manuel	Tirant lo Blanch	2015	
(Las) Políticas del Racismo: Métodos e Ideologías / Fallada García-Valle, Juan Ramón	PUV	2016	
Ley de Seguridad Ciudadana / Coquillat Vicente, Ángela	Tirant lo Blanch	2015	
(Los) Derechos Humanos en España: Un Balance Crítico / Rey Martínez, Fernando	Tirant lo Blanch	201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os) Límites de la Nación y la Reforma Constitucional en España / Martínez Calvo, Juan	Tirant lo Blanch	2015	
(Los) Nuevos Derechos de Participación Derechos Constituyentes o Constitucionales: Estudio del Modelo Constitucional de Ecuador / Noguera Fernández, Albert	Tirant lo Blanch	2016	
Más Sobre Derechos Lingüísticos: Reflexiones Sobre los Límites Constitucionales y su Interpretación por el Tribunal Constitucional / Milian i Massana, Antoni	Tirant lo Blanch	2016	
Nuevas Dimensiones de la Participación Política: III Jornadas Internacionales de Derecho Constitucional Brasil-Italia-España / Pajares Montolio, Emilio	Tirant lo Blanch	2015	
Public law v.2016-4	Sweet & Maxwell	2016	
Rights and Freedoms in the Spanish Constitution / Aguilera Vaqués, Mar	Tirant lo Blanch	2015	
Seguridad Privada y Derechos Fundamentales: ((La) Nueva Ley 5/2014, de 4 de abril, de Seguridad Privada) / Ridaura Martínez, María Josefa	Tirant lo Blanch	2015	
Zeitschrift fur Gesetzgebung : ZG v.2016-3	C.F.Muller	2016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찰학연구 v.47 / 경찰학연구 편집위원회	경찰대학	2016	
소청결정사례집 v.52 /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	행정자치부	2016	
(論点解説) 情報公開・個人情報保護審査會答申例 / 森田明	日本評論社	2016	
(図解よくわかる) 自治体の行政不服審査制度のしくみ / 金岡昭	學陽書房	2016	
(実務セレクト) 生活安全警察110判例 / 江原伸一	東京法令出版	2016	
(注解)消防關係法規集: 内容現在 平成28年 3月1日 / 近代消防社	近代消防社	2016	
(逐條解説) 行政手續法: 改正行審法対応版 / 行政管理研究センター	ぎょうせい	201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土地收用裁決例集: 平成26年度裁決 / 全國收用委員會連絡協議會	ぎょうせい	2016	
行政救濟法 / 神橋一彦	信山社	2016	
行政法 I: 現代行政過程論 / 大橋洋一	有斐閣	2016	
Administrative law review v.68-3 / American Bar Association	American Bar Association	2016	
Código del Régimen Jurídico de las Administraciones Públicas y de Procedimiento Administrativo / Spain	Tirant lo Blanch	2015	
Código de Transparencia y Derecho de Acceso a la Información Pública / Spain	Tirant lo Blanch	2015	
Derecho de la Seguridad, Responsabilidad Policial y Penitenciaria / Acosta Gallo, Pablo	Tirant lo Blanch	2016	
Handbuch Ius Publicum Europaeum, Band VI: Verwaltungsrecht in Europa: Institutionen / Bogdandy, Armin von	C.F. Müller	2016	
Introducción al Derecho Administrativo: Teoría y 100 Casos Prácticos / Blanquer, David Criado	Tirant lo Blanch	2015	
Lecciones de Derecho Administrativo / Parejo Alfonso, Luciano	Tirant lo Blanch	2016	
Ley de Racionalización y Sostenibilidad de la Administración Local: Estudio sobre la Aplicación de la Ley 27/2013, de 27 de Diciembre / Domínguez Vila, Antonio	Tirant lo Blanch	2015	
Revue Franç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6-4 / Dalloz	Dalloz	2016	

[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犯罪分析 v.2016 / 대검찰청	大檢察廳	2016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뒤집기: 2016 /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2016	
피고인의 형벌감수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	2016	
형사법의 신동향 v.52 / 대검찰청 검찰미래기획단	대검찰청	2016	
刑事政策研究 v.107 / 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韓國刑事政策研究院	201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刑事判例研究 v.24 / 형사판례연구회	博英社	2016	
その行為、本当に処罰しますか: 憲法的刑事立法論序説 / 上田正基	弘文堂	2016	
ビギナーズ犯罪学 / 守山正	成文堂	2016	
(リーディングス) 刑事政策 / 朴元奎	法律文化社	2016	
近代犯罪心理学文献選. 第1巻: 囚人の心理 / 藤野京子	クレス出版	2016	
保護観察とは何か: 実務の視点からとらえる / 今福章二	法律文化社	2016	
少年非行と修復的司法: 被害者と加害者の対話がもたらすもの / 山田由紀子	新科学出版社	2016	
(實務に效く) 企業犯罪とコンプライアンス判例精選 / 有斐閣	有斐閣	2016	
獄務要書 / 小河滋次郎	羣文社	2016	
親密圏における暴力: 被害者支援と法 / 手嶋昭子	信山社	2016	
Análisis de las Reformas Penales: Presente y Futuro / Muñoz Conde, Francisco	Tirant lo Blanch	2015	
Comentarios a la Reforma del Código Penal de 2015 / González Cussac, José L	Tirant lo Blanch	2015	
Compendio de Derecho Penal: Parte General / Orts Berenguer, Enrique	Tirant lo Blanch	2015	
Criminalística Forense / Bosquet Pastor, Sergio	Tirant lo Blanch	2015	
Código Penal: con Jurisprudencia Sistematizada / Spain	Tirant lo Blanch	2016	
Derecho Penal Constitucional / Quintero Olivares, Gonzalo	Tirant lo Blanch	2015	
Derecho Penal de la Peligrosidad y Prevención de la Reincidencia / Orts Berenguer, Enrique	Tirant lo Blanch	2015	
Derecho Penal Económico y de la Empresa: Parte especial / Martínez-Buján Pérez, Carlos	Tirant lo Blanch	2015	
Derecho Penal Económico y de la Empresa: Parte General / Martínez-Buján Pérez, Carlos	Tirant lo Blanch	2016	
Derecho Penal Español: Parte especial / Queralt i Jimenez, Joan Josep	Tirant lo Blanch	2015	
Derecho Penal Europeo y Legislación Española: (Las) Reformas del Código Penal / Mata Barranco, Norberto J. de la	Tirant lo Blanch	2015	
Derecho Penal: Parte Especial / Muñoz Conde, Francisco	Tirant lo Blanch	201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Derecho penal: parte especial / Vives Antón, Tomás S	Tirant lo Blanch	2015	
Derecho Penal: Parte General / Muñoz Conde, Francisco	Tirant lo blanch	2015	
Derecho Penitenciario: Enseñanza y Aprendizaje / Vicente Martínez, Rosario de	Tirant lo Blanch	2015	
(El) Delito de Online Child Grooming o Propuesta Sexual Telemática a Menores / Villacampa Estiarte, Carolina	Tirant lo Blanch	2015	
Elementos de Derecho Penal: Parte General / Quintanar Díez, Manuel	Tirant lo Blanch	2015	
(El) Estatuto de las Víctimas de Delitos: Comentarios a la Ley 4/2015 / Josep M. ^a Tamarit Sumalla	Tirant lo Blanch	2015	
(El) Indulto: Tratamiento y Control Jurisdiccional: Con Formularios / García San Martín, Jerónimo	Tirant lo Blanch	2015	
Escuchar a las Víctimas: Victimología, Derecho Victimal y Atención a las Víctimas / Daza Bonachela, María del Mar	Tirant lo Blanch	2016	
Fraude Electrónico: Su Gestión Penal y Civil / Carolina Sanchis Crespo	Tirant lo Blanch	2015	
Género y Violencia: Análisis del Fenómeno de la Violencia de Género tras 10 años de Aplicación de la ley: En el Umbral de un gran Cambio en el Modelo de Sociedad / Gisbert Grifo, Susana	Tirant lo Blanch	2015	
Identificaciones Policiales y Discriminación Racial en España: Evaluación de un Programa para su Reducción / García España, Elisa	Tirant lo Blanch	2016	
Interpretación en Contextos de Violencia de Género / Toledano Buendía, Carmen	Tirant lo Blanch	2015	
Jurisdicción y Competencia Penal en Relación al Acceso Transfronterizo en Materia de Ciberdelitos / Velasco San Martín, Cristos	Tirant lo Blanch	2016	
(La) Aplicación de las Circunstancias del Delito / Borja Jiménez, Emiliano	Tirant lo Blanch	2015	
(La) Orden de Protección Europea: (La) Protección de Víctimas de Violencia de Género y Cooperación Judicial Penal de Europa / Martínez García, Elena	Tirant lo Blanch	201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y General Penitenciaria: su Reglamento y Disposiciones Complementarias(Anotadas y Concordadas) / Ferrer Gutiérrez, Antonio	Tirant lo Blanch	2015	
(Los) Delitos Leves / Faraldo Cabana, Patricia	Tirant lo Blanch	2016	
(Los) Delitos Societarios: Incluye la Reforma del Código Penal de 2015 / Faraldo Cabana, Patricia	Tirant lo Blanch	2015	
Manual de Derecho Penal Medioambiental / Muñoz Conde, Francisco	Tirant lo Blanch	2015	
Manual de Derecho Penal: Parte Especial: (Actualizado con las LLOO 1/2015 y 2/2015) Tomo 1 : Doctrina y Jurisprudencia con Casos Solucionados / Corcoy Bidasolo, Mirentxu	Tirant lo Blanch	2015	
Manual Práctico de Reconocimiento Mutuo Penal en la Unión Europea: Preguntas, Respuestas y Formularios de la Ley 23/14 de 20 de Noviembre / Rodríguez-Medel Nieto, Carmen	Tirant lo Blanch	2015	
Münchener Kommentar zum Strafgesetzbuch, Bd.2: §§38-79b / Joecks, Wolfgang	C.H.Beck	2016	
Política Criminal, Cultura y Abuso Sexual de Menores: un Estudio sobre los Artículos 183 y Siguietes del Código Penal / Ramos Vázquez, José Antonio	Tirant lo Blanch	2016	
Régimen Jurídico de la Prevención y Represión del Blanqueo de Capitales / Vidales Rodríguez, Caty	Tirant lo Blanch	2015	
Sobre el Estado de Necesidad Existencial / Sánchez Dafauce, Mario	Tirant lo Blanch	2016	
Tratado de Derecho Penal Español: Parte Especial IV: Delitos Contra la Constitución / Álvarez García, Francisco Javier	Tirant lo Blanch	2016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기업지배구조연구 v.2015-1 /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2016	
기업지배구조연구 v.2016-2 /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2016	
스튜어드십 코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201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주식회사의 준법경영 관리체계 / 정준우	나우커뮤니케이션	2016	
2015年版 新規上場の戦略: 企業統治・資金調達・役職員待遇・子會社上場 / 商事法務(株)	商事法務(株)	2016	
スクイーズ・アウトと株価決定の実務: 2016 / 内藤良祐	新日本法規出版	2016	
経営支配権をめぐる法律実務: 解説・書式等とケーススタディ: 2016 / 이목강청	新日本法規出版	2016	
(圖解) 海上交通安全法 / 海上保安庁交通部航行安全課	成山堂書店	2016	
米国司法省による取締り: 最新動向と日本企業が留意すべきリスクおよび対応策 / 西村高等法務研究所	商事法務	2016	
(事例で学ぶ) 手形法・小切手法 / 丸山秀平	法學書院	2016	
商法總則・商行為法・保險法・海商法 / 稻田俊信	法學書院	2016	
商取引法講義: 講義の理解に役立つ圖解や資料付き / 河野正英	大學教育出版	2016	
生命保險の法務と実務 / 日本生命保險生命保險研究会	金融財政事情研究会	2016	
生命保險・傷害疾病定額保險契約法実務判例集成. 上 / 長谷川仁彦	保險毎日新聞社	2016	
(銀行等代理店のための) 改正保險業法ハンドブック / 鍾野裕宗	ビジネス教育出版社	2016	
株主還元の実態調査: 配当, 自己株式の取得・処理, 株主優待 / 商事法務(株)	商事法務	2016	
(平成28年版) 電子商取引及び電子決済等に関する準則と解説 / 商事法務(株)	商事法務(株)	2016	
海法會誌 v.88 / 日本海法會	勁草書房	2016	
(現代) 會社法講義 / 石山卓磨	成文堂	2016	
會社法務部: 第11次實態調査の分析報告 / 事法務研究会	商事法務研究会	2016	
會社法: 平成26年の法改正に對應. 2: 第2編 第4章: 機關から第9章: 清算まで (第295條 ~ 第574條) / 日本評論社	日本評論社	2016	
後発事象ベストプラクティス / 商事法務(株)	商事法務(株)	2016	
(El) Registro de Buques y Otros Vehículos de la Navegación: Ley 14/2014, de 24 de Julio, de Navegación Marítima / María del Pino Domínguez Cabrera	Tirant lo Blanch	2015	
Kölner Kommentar zum Aktiengesetz. Bd. 7: 2. Teillieferung: §§ 329-398 AktG, §§ 1-46 EGAktG / Zöllner, Wolfgang	Carl Heymanns	201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loyd's law reports : insurance & reinsurance v.2016-8	Lloyd's of London Press	2016	
Sociedades de Capital / Olavarria Iglesia, Jesús	Tirant lo Blanch	2015	

[사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6 개정)외국법자문사법 해설 / 법무부	법무부	2016	
대체적 분쟁해결 총론 / 박철규	오래	2016	
로펌 인 코리아 / 김진원	리걸타임즈	2016	
法務年鑑 v.2016 / 법무부	법무부	2016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 방안에 관한 연구 /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	2016	
채권회수 이론과 실무: 채권회수의 모든 과정에 대한 법률이론과 실무 / 전용우	유로	2016	
セクシュアル・マイノリティQ&A / LGBT支援法律家ネットワーク出版プロジェクト	弘文堂	2016	
檢察統計年報 v.2015 / 法務省	法務省	2016	
矯正統計年報 v.2015-1 / 法務省	法務省	2016	
矯正統計年報 v.2015-2 / 法務省	法務省	2016	
民事・訟務・人權統計年報 v.2015-1 / 法務省	法務省	2016	
保護統計年報 v.2015 / 法務省	法務省	2016	
司法統計年報 v.2015-1 / 最高裁判所事務總局	最高裁判所事務總局	2016	
司法統計年報 v.2015-2 / 最高裁判所事務總局	最高裁判所事務總局	2016	
司法統計年報 v.2015-3 / 最高裁判所事務總局	最高裁判所事務總局	2016	
司法統計年報 v.2015-4 / 最高裁判所事務總局	最高裁判所事務總局	2016	
裁判と法律學: 最高裁判所判例補遺 / 藤田由靖	有斐閣	2016	
出入國管理統計年報 v.55 / 法務省	法務省	2016	
Bankruptcy exemption manual / Brown, William Houston	Thomson West	201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ommentary on the european insolvency regulation / Bork, Reinha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El) Derecho de la Insolvencia: (El) Concurso de Acreedores / Campuzano Laguillo, Ana Belén	Tirant lo Blanch	2015	
(El) Proceso Concursal Ante Insolvencias Conexas / García-Rostán Calvin, Gemma	Tirant lo Blanch	2015	
Formularios concursales: Formularios y Documentos Adaptados a la Práctica Diaria del Administrador Concursal / Aznar Giner, Eduardo	Tirant lo Blanch	2016	
Independencia Judicial y Estado Constitucional: (El) Gobierno Judicial / Aguiar de Luque, Luis	Tirant lo Blanch	2016	
(La) Responsabilidad General y Tributaria de los Administradores Concursales / Carbajo Vasco, Domingo	Tirant lo Blanch	2015	
Legislación concursal / Campuzano Laguillo, Ana Belén	Tirant lo Blanch	2016	

[민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事裁判의 諸問題 v.24 / 민사실무연구회	韓國司法行政學會	2016	
簡裁民事訴訟マニュアル / 園部厚	日本評論社	2016	
民事訴訟公雜誌 v.62 / 民事訴訟法學會	法律文化社	2016	
比較民事手続法研究: 実効的權利保護のあり方 / 春日偉知郎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16	
(判例講義) 民事訴訟法 / 小林秀之	悠々社	2016	
Ley de la Jurisdicción Social, Ley 36/2011, de 10 de octubre, reguladora de la jurisdicción social (BOE 11 de octubre de 2011) / Goerlich Peset, José María	Tirant lo blanch	2015	
Manual Práctico del Recurso de Casación Penal / Prat Westerlindh, Carlos	Tirant lo Blanch	2015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전국 형사법관 포럼 결과보고서: 2016 /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2016	
刑事訴訟 理論과 實務 v.7-1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15	
刑事訴訟 理論과 實務 v.7-2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15	
刑事訴訟 理論과 實務 v.8-1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16	
(リーディングス) 刑事訴訟法 / 川崎英明	法律文化社	2016	
公判前整理手続の実務 / 山崎学	弘文堂	2016	
實踐的刑事事實認定と情況證據 / 植村立郎	立花書房	2016	
(最新)重要判例250: 刑事訴訟法 / 田口守一	弘文堂	2016	
Comentarios al Código Penal: Reforma LO 1/2015 y LO 2/2015 / Corcoy Bidasolo, Mirentxu	Tirant lo Blanch	2015	
Derecho y Verdad: Gealogía(s) II / Sucar, Germán	Tirant lo Blanch	2015	
(La) lofoscopia y sus formas / Bosquet Pastor, Sergio	Tirant lo Blanch	2015	

[민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事法學 v.75 / 한국민사법학회	韓國司法行政學會	2016	
民事法學 v.76 / 한국민사법학회	韓國司法行政學會	2016	
(변호사 입장에서 본) 사해행위취소실무. I / 최한신	유로	2016	
(註釋)民法. [2]: 債權各則(6):§750 / 김용담	韓國司法行政學會	2016	
(註釋)民法: 親族(1) [1]: §767-§833 / 김주수	韓國司法行政學會	2016	
(註釋)民法: 親族(2) [1]: §834-§843 / 김주수	韓國司法行政學會	2016	
(註釋)民法: 親族(3) [1]: §844-§927의2 / 김주수	韓國司法行政學會	2016	
(註釋)民法: 親族(4) [1]: §928-§979 / 김주수	韓國司法行政學會	2016	
친족후견인을 위한 후견가이드 / 인천가정법원	인천가정법원	2016	
家庭の法と裁判 v.6 / 家庭の法と裁判研究會	日本加除出版	2016	
(図解でスッキリ!) 民法改正重要テーマ100 / 白川敬裕	中央経済社	2016	
立法沿革研究の新段階: 明治民法情報基盤の構築 / 佐野智也	信山社出版	201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法(相続関係)等の改正に関する中間試案 / 商事法務(株)	商事法務(株)	2016	
民事信託の理論と実務 / 新井誠	日本加除出版	2016	
事務管理・不當利得・不法行為 / 田山輝明	成文堂	2016	
私法 v.78 / 日本私法學會	有斐閣	2016	
私法判例リマックス : 判例信託論 v.53 / 日本評論社	日本評論社	2016	
事業再生と債權管理 v.152 / 金融破綻政事情研究會	金融破綻政事情研究會	2016	
事業再生と債權管理 v.153 / 金融破綻政事情研究會	金融破綻政事情研究會	2016	
詐欺行為取消訴訟 / 飯原一乗	悠々社	2016	
消費者のための欠陥住宅判例: 被害の救済から予防をめざして, 第7集 / 欠陥住宅被害全国連絡協議会	民事法研究會	2016	
(新) 基本民法: 5 契約編 / 大村敦志	有斐閣	2016	
信託に関する登記 / 横山亘	テイハン	2016	
(実務) 相続関係訴訟: 遺産分割の前提問題等に係る民事訴訟実務マニュアル / 田村洋三	日本加除出版	2016	
外科系医師が知っておきたい法律の知識 / 田邊昇	洋學社	2016	
要件事實民法, 1: 總則 / 大江忠	第一法規	2016	
医療関連死: 医事紛争をめぐる法医学者の視点 / 藤田真幸	醫齒藥出版	2016	
医療紛争解決への処方箋: 行政・医療界・法曹界の役割と対策 / 植木哲	ぎょうせい	2016	
子どもをめぐる法律問題: 弁護士専門研修講座 / 東京弁護士会弁護士研修センター運営委員会	ぎょうせい	2016	
(最新) マンション標準管理規約の解説: 平成28年3月発表の改正点をすべて収録! / 渡辺晋	住宅新報社	2016	
休眠担保権に関する登記手続と法律実務: 供託・不動産登記法70条3項後段特例, 精算人選任, 公示催告・除権決定, 抵当権取消訴訟 / 正影秀明	日本加除出版	2016	
Análisis Civil y Constitucional de la Situación Jurídica del Nasciturus / Garzón Jiménez, Roberto	Tirant lo Blanch	2015	
Codi civil de Catalunya i lleis complementàries: inclou el Codi de consum / Solé Resina, Judith	Tirant lo Blanch	2015	
Codi civil de Catalunya: Jurisprudència Sistematitzada: Inclou Resolucions de la Direcció General de Dret i Entitats Jurídiques / Solé Resina, Judith	Tirant lo Blanch	201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omentarios a las Sentencias del Tribunal Constitucional en Materia Civil / Martínez Vázquez de Castro, Luis	Tirant lo Blanch	2016	
Curso de Derecho Civil. [I-1]: Parte General y Derecho de la Persona / Sánchez Calero, Francisco Javier Moreno Quesada, Bernardo González Porras, José Manuel Ossorio Serrano, Juan Miguel	Tirant lo Blanch	2015	
Curso de Derecho Civil. I Bis: Bis, Derecho de familia / Sánchez Calero, Francisco Javier Ruiz-Rico Ruiz-Morón, Julia Herrera Campos, Ramón Moreno Quesada, Luis	Tirant lo Blanch	2015	
Curso de Derecho Civil. IV: Derechos de Familia y Sucesiones / Sánchez Calero, Francisco Javier	Tirant lo Blanch	2015	
Curso de derecho privado / Orduña Moreno, Francisco Javier	Tirant lo blanch	2015	
Código civil / Blasco Gascò, Francisco de P	Tirant lo Blanch	2015	
Derecho civil: Obligaciones y Contratos. II / Verda y Beamonte, José Ramón de Atienza Navarro, María Luisa Carrión Olmos, Salvador Chaparro Matamoros, P	Tirant lo Blanch	2015	
Derecho Civil. I : Parte General y Derecho de la Persona / Verda y Beamonte, José Ramón de Alventosa del Río, Josefina	Tirant lo Blanch	2016	
Derecho Civil. III / Verda y Beamonte, José Ramón de	Tirant lo Blanch	2015	
Derecho de los Bienes Públicos / González García, Julio V	Tirant lo Blanch	2015	
Derecho de Sucesiones / López y López, Ángel Manuel	Tirant lo Blanch	2015	
Derechos Reales de Garantía y Garantías Posesorias: Retención, Prenda y Anticresis / Asensio Borrellas, Víctor J	Tirant lo Blanch	2015	
(El) Contrato de Gestión Hotelera / Iñiguez, Pilar	Tirant lo Blanch	2015	
GPS Propiedad Horizontal: Guía íntegra Para la Administración de Fincas / Rosat Aced, José Ignacio	Tirant lo Blanch	2016	
Harper, James and Gray on torts 1-5: 2016 Cumulative supplement No.2 / Harper, Fowler V	Aspen publishers	201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Harper, James and Gray on torts 1: (Revised) §§1,1-4,12 / Harper, Fowler V	Aspen publishers	2015	
Harper, James and Gray on torts 6: Tables and index(2016 Cumulative supplement No.2) / Harper, Fowler V	Aspen publishers	2016	
Instituciones de Derecho Civil: Derecho de Familia / Blasco Gascó, Francisco de P	Tirant lo Blanch	2015	
Instituciones de Derecho Civil: Derecho de Sucesiones / Blasco Gascó, Francisco de P	Tirant lo Blanch	2015	
Introducción al Derecho Patrimonial Privado / Capilla Roncero, Francisco	Tirant lo Blanch	2015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Buch 2: Recht der Schuldverhältnisse §§244-248; PrKG(Geldrecht) / Ridble, Volker Omlor, Sebastian	Sellier-de Gruyter	2016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Einführungsgesetz zum Bürgerlichen Gesetzbuche/IPR: Einleitung zur Rom I-VO; Art 1-10 Rom I-VO(Internationales Vertragsrecht 1) / Magnus, Ulrich Armbrüster, Christian	Sellier-de Gruyter	2016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Einführungsgesetz zum Bürgerlichen Gesetzbuche/IPR: Art 11-29 RomI-VO; Art 46b, c EGBGB; Verfahrensrecht für internationale Verträge(IntVertrVerfR) / Magnus, Ulrich Armbrüster, Christian	Sellier-de Gruyter	2016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Buch 2: Recht der Schuldverhältnisse §§613a-619a(Dienstvertragsrecht 2) / Rieble, Volker Annuß, Georg Fishinger, Philipp S Oetker, Hartmut Richardi, Reinhard	Sellier-de Gruyter	2016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Buch 2: Recht der Schuldverhältnisse §§620-630(Dienstvertragsrecht 3) / Rofls, Christian Oetker, Jartmut Preis, Ulrich	Sellier-de Gruyter	201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Buch 5: Erbrecht §§ 2197–2228(Testament2– Testamentsvollstreckung) / Baldus, Christian Reimann, Wolfgang	Sellier–de Gruyter	2016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Einführungsgesetz zum Bürgerlichen Gesetzbuche/IPR: Internationales Verfahrensrecht in Ehesachen 2(Deutsches Recht: FamFG) / Henrich, Dieter Spellenberg, Ulrich	Sellier–de Gruyter	2016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Einführungsgesetz zum Bürgerlichen Gesetzbuche/IPR: Haager Unterhaltsprotokoll(HUP) / Henrich, Dieter Mankowski, Peter	Sellier–de Gruyter	2016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Buch 2: Recht der Schuldverhältnisse §§ 358–360(Verbundene und zusammenhänge) / Löwisch, Manfred Herresthal, Carsten	Sellier–de Gruyter	2017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Buch 5: Erbrecht §§ 2346–2385(Erbverzicht, Erbschein, Erbschafts Kauf) / Baldus, Christian Herzog, Stephanie Olshausen, Wolfgang Schotten, Günther	Sellier–de Gruyter	2016	
(Las) Crisis Matrimoniales: Nulidad, Separación y Divorcio: Revisado y Actualizado 1 de enero de 2016 / Álvarez Alarcón, Arturo	Tirant lo Blanch	2016	
(Las) Indemnizaciones de las Víctimas de Accidentes de Tráfico: (El) Nuevo Sistema de Valoración de los Daños y Perjuicios Personales: Ley 35/2015 de 22 de septiembre (BOE 23 de septiembre de 2015) / Agüero Ramón–Llín, Elena	Tirant lo Blanch	2015	
Ley Hipotecaria y su Reglamento / Blasco Gascó, Francisco	Tirant lo Blanch	2015	
Manual de Derecho Inmobiliario Registral / Sánchez Calero, Francisco Javier	Tirant lo Blanch	2015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and 4: Schuldrecht– Besonderer Teil II / Rebmann, Kurt	C.H.Beck	201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d. 7: Sachenrecht §§ 854–1296 WEG·Erbbaurecht / Rebmann, Kurt	C.H. Beck	2017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d. 8: Familienrecht I, §§ 1297–1588, Versorgungsausgleichsgesetz·Gewaltschutzgesetz·Lebenspartnerschaftsgesetz / Rebmann, Kurt	C.H. Beck	2017	
Obligationenrecht, II: Art. 530–964 OR(Art. 1–6 SchlT AG, Art. 1–11 ÜBest(GmbH), Art. 1–2 ÜBest(Rechnungslegung 2011), Art. 1–6 SchlT AG, Art. 1–3 ÜBest(GAFI 2014) / Honsell, Heinrich	Helbing Lichtenhahn Verlag	2016	
Registro Civil: Legislación Básica y Disposiciones Complementarias / Flors Maties, José	Tirant lo Blanch	2015	
Responsabilidad Civil y Seguro en la Circulación de Vehículos a Motor: Baremo de Indemnizaciones / Flors Maties, José	Tirant lo Blanch	2015	
Régimen Económico Matrimonial: Aspectos Sustantivos y Conflictuales / Quinzá Redondo, Jacinto Pablo	Tirant lo Blanch	2016	
Schweizerisches Privatrecht 8/9: Rechnungslegung im Gesellschaftsrecht / Chappuis, Christine Handschin, Lukas	Helbing Lichtenhahn Verlag	2016	
XVIII Congreso Internacional de Derecho registral IPRA–CINDER: Amsterdam 2012 / [Varios Autores]	Tirant lo Blanch	2016	

[판례총서]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最高裁判所判例集 v.70-1 /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6	
最高裁判所判例集 v.70-2 /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6	
最高裁判所判例集 v.70-3 /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6	
Supreme court decisions vol.12 / Supreme Court Library	Supreme Court Library	2016	

• 일반도서

[총류]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제11회 전국 법원 사서 세미나 자료집 2016 /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2016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감정평가학 논집 v.15-2 / 한국감정평가학회	한국감정평가학회	2016	
國防研究 v.59-3 / 국방연구원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2016	
韓國行政研究 v.25-3 / 한국행정연구원	韓國行政研究院	2016	

[응용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医療現場の英語辞典 / 山田政美	三省堂	2016	
Auditoría Sociolaboral: Teoría y Práctica de una Herramienta para la Gestión de los RRHH / Bas, Emilio del	Tirant lo Blanch	2015	
GPS Contabilidad Financiera y Costes / Ruiz de Palacios Villaverde, M. Mercedes	Tirant lo Blanch	2016	
Refreshing your brand to attract new customers: Leading marketing executives on developing brands that achieve results / Crosby, Samantha	Aspatore	2015	
Updating your performance management strategy: HR executives on creating an effective work environment and adding value / Coté, Tracy	Aspatore	2015	

• 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 기
1	BFL80호 (2016. 11)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2	LAW & TECHNOLOGY 제12권 제4호(2016. 07)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격월간
3	Legal Times Vol.100(2016. 11)	(주)리걸타임즈	월간
4	거래가격통권 550호(2016. 11)	대한건설협회	월간
5	考試界 61권 11호(통권 717호)	국가고시학회	월간
6	노동법률통권 306호(2016. 11)	中央經濟社	월간
7	문학사상 2016년 10월	문학사상사	월간
8	문학사상 2016년 11월	문학사상사	월간
9	司法行政 57권 11호(통권 671호)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0	속보삼일총서통권 1390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1	속보삼일총서통권 1391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2	속보삼일총서통권 1392호+별책부록(2016. 10)	삼일회계법인	주간
13	속보삼일총서통권 139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4	속보삼일총서통권 1394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5	속보삼일총서통권 1395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6	시사저널 No.1408	(주)독립신문사	주간
17	시사저널 No.1409	(주)독립신문사	주간
18	시사저널 No.1410	(주)독립신문사	주간
19	시사저널 No.1411	(주)독립신문사	주간
20	시사저널 No.1412	(주)독립신문사	주간
21	신동아 2016년 11월	동아일보사	월간
22	월간 인사관리 2016. 11 vol.327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23	월간조선 2016년 11월	조선일보사	월간
24	월간중앙 2016년 11월	중앙일보사	월간
25	이코노미스트 No.1354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6	이코노미스트 No.1355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7	이코노미스트 No.1356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8	이코노미스트 No.1357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9	이코노미스트 No.1358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 기
30	이코노미스트 No.135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1	종합물가정보통권 552호 I, II호+부록 (2016년 11월)	한국물가정보	월간
32	주간조선 No.2427	조선일보사	주간
33	주간조선 No.2428	조선일보사	주간
34	주간조선 No.2429	조선일보사	주간
35	주간조선 No.2430	조선일보사	주간
36	주간조선 No.2431	조선일보사	주간
37	출판저널 Vol.489(2016. 10)	출판저널	월간
38	現代文學 2016년 11월	현대문학사	월간

[일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 기
1	(季刊)労働法 254號	總合労働研究所	계간
2	(季刊)刑事辯護 No.88(2016 Winter)	現代人文社	계간
3	(旬刊)商事法務 2110號	商事法務研究會	순간
4	(旬刊)商事法務 2111號	商事法務研究會	순간
5	(旬刊)商事法務 2112號	商事法務研究會	순간
6	(月刊)登記情報 56卷 10號 (659號)	テイハン	월간
7	NBL 1082號	商事法務	반월간
8	NBL 1083號	商事法務	반월간
9	コピーライト Vol.56 No.666	著作権情報センタ	월간
10	ジュリスト 1498號	有斐閣	격주간
11	パテント 69卷 11號(通卷 809號)	日本弁理士會	월간
12	パテント 69卷 12號(通卷 810號)	日本弁理士會	월간
13	國際法外交雜誌 115卷 2號	國際法學會	계간
14	國際商事法務 44卷 10號(通卷 652號)	國際商事法務研究所	월간
15	國際商事法務 44卷 9號(通卷 651號)	國際商事法務研究所	월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 기
16	金融·商事判例 No.1499	經濟法令研究會	반월간
17	金融·商事判例 No.1500	經濟法令研究會	반월간
18	金融·商事判例 No.1501	經濟法令研究會	반월간
19	金融法務事情 2050號	金融銀行政事情研究會	순간
20	金融法務事情 2051號	金融銀行政事情研究會	순간
21	労働法律旬報 1871號	労働法律旬報社	순간
22	労働法律旬報 1872號	労働法律旬報社	순간
23	労働法律旬報 1873號	労働法律旬報社	순간
24	労働判例 No.1139	産勞總合研究所	반월간
25	労働判例 No.1140	産勞總合研究所	반월간
26	登記研究 823號(2016. 09)	テイハン	월간
27	文藝春秋 2016年 11月號	文藝春秋	월간
28	民商法雜誌 152卷 2號	有斐閣	월간
29	發明 113卷 10號(2016. 10)	發明協會	월간
30	法律のひろば 69卷 10號	ぎょうせい	월간
31	法律時報 88卷 11號(通卷 1104號)	日本評論社	월간
32	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454號	第一法規	월간
33	法曹時報 68卷 9號	法曹會	월간
34	法學セミナー 61卷 10號(通卷 741號)	日本評論社	월간
35	法學セミナー 61卷 11號(通卷 742號)	日本評論社	월간
36	法學教室 433號(2016. 10)	有斐閣	월간
37	法學論叢 179卷 5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38	法學研究 89卷 7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39	法學研究 89卷 8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0	法學協會雜誌 133卷 8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41	法學協會雜誌 133卷 9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42	銀行法務 21 60卷 12號(806號)	經濟法令研究會	월간
43	自治研究 92卷 10號 (通卷 1112號)	第一法規	월간
44	罪と罰 53卷 4號(通卷 212號)	大藏省印刷局	계간
45	判例タイムズ 1427號	判例タイムズ社	월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 기
46	判例時報 2301號	判例時報社	순간
47	判例時報 2302號	判例時報社	순간
48	判例時報 2303號	判例時報社	순간
49	判例地方自治 410號(2016. 09)	ぎょうせい	월간
50	判例地方自治 411號(2016. 10)	ぎょうせい	월간
51	現代消費者法 No.32	民事法研究會	계간
52	戸籍 929號	テイハン	월간
53	戸籍 930號	テイハン	월간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 기
1	(The)international lawyer Vol.49 No.2(2015 Fall)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2	Actualidad Juridica aranzadi No.922	Thomson Reuters	격주간
3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8 No.3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4	AfP(Archiv für Presserecht) Jahrg.47 Hft.5	Mohr	격월간
5	Archiv des Öffentlichen Rechts Band.141 Heft.3	J. C. B. Mohr	계간
6	Archiv fü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6 Hft.5	J. C. B. Mohr	격월간
7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Vol.24 No.3(September 2016)	Springer Customer Service Center GmbH	계간
8	BB(Betriebs-Berater) Jahrg.71 Nr.40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9	BB(Betriebs-Berater) Jahrg.71 Nr.41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71 Nr.42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71 Nr.43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2	BB(Betriebs-Berater) Jahrg.71 Nr.44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 기
13	Berkeley Journal of Employment and Labor Law Vol.37 No.2	Berkeley Law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반년간
14	Berkeley Journal of Gender, Law & Justice 2016 VOL.31:2	Berkeley Law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반년간
15	BNA's Patents, Trademark & Copyright Journal Vol.92 No.2279	BNA	주간
16	BNA's Patents, Trademark & Copyright Journal Vol.92 No.2280	BNA	주간
17	BNA's Patents, Trademark & Copyright Journal Vol.92 No.2281	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45 (2016)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46 (2016)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47 (2016)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 Nr.48 (2016)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 Nr.49 (2016)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 Nr.50 (2016)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6(2016)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5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7(2016)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6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8(2016)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7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9(2016)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8	Computer und Recht 2016, Issue,5	Otto Schmidt	월간
29	Computer und Recht 2016, heft,10	Otto Schmidt	월간
30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4 Hft.11	Giesecking	월간
31	Der Spiegel 2016, Nr.41	Spiegel	주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 기
32	Der Spiegel 2016, Nr.42	Spiegel	주간
33	Der Spiegel 2016, Nr.43	Spiegel	주간
34	Der Spiegel 2016, Nr.44	Spiegel	주간
35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4 Nr.10	Carl Heymanns	월간
36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61 Hft.19	Verlag Dr.Otto Schmidt Koln	격주간
37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61 Hft.20	Verlag Dr.Otto Schmidt Koln	격주간
38	Die Öffentliche Verwaltung Jahrg.69 Heft19	Kohlhammer	반월간
39	Die Öffentliche Verwaltung Jahrg.69 Heft20	Kohlhammer	반월간
40	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31 Hft.19	Carl Heymanns	반월간
41	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31 Hft.20	Carl Heymanns	반월간
42	Europä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43 hft.18-20	N.P.Engel Verlag	반월간
43	European law review Vol.41 No.5(2016. 10)	Sweet & Maxwell	격월간
44	EuZW(Europäische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ahrgang.27 He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5	EuZW(Europäische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ahrgang.27 Heft.19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6	Familie und Recht Jahrg.27 Hft.10	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	월간
47	Family Court Review Vol.54 No.4(2016. 10)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8	FamRZ(Zeitschrift fü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3 Hft.19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	반월간
49	FamRZ(Zeitschrift fü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3 Hft.20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	반월간
50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8 Nr.10	Wiley-VCH	월간
51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8 Heft.19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52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8 Heft.20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 기
53	Höchst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6, Nr.10	Stollfuss	월간
54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3 no.38	BNA	주간
55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3 no.39	BNA	주간
56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3 no.41	BNA	주간
57	Jura:Juristische Ausbildung Bd.38 Hft.10	Walter de Gruyter GmbH & Co. KG	월간
58	Juristen Zeitung Jahrg.71, Hft.19	J. C. B. Mohr	반월간
59	Juristen Zeitung Jahrg.71, Hft.20	J. C. B. Mohr	반월간
60	Juristische Rundschau 2016 heft.10	Walter de Gruyter	월간
61	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ü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Jahrg.99 Hft.2	Nomos	계간
62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6, N.39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6, N.40	Juris-Classeur	주간
64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6, N.41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6, N.42	Juris-Classeur	주간
66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re 2016, N.38	Juris-Classeur	주간
67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re 2016, N.39	Juris-Classeur	주간
68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re 2016, N.40	Juris-Classeur	주간
69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re 2016, N.41	Juris-Classeur	주간
70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re 2016, N.42	Juris-Classeur	주간
71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6, N.40	Juris-Classeur	주간
72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6, N.41	Juris-Classeur	주간
73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6, N.42	Juris-Classeur	주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 기
74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6, N.43-44	Juris-Classeur	주간
75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6, N.32	dalloz	주간
76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6, N.33	dalloz	주간
77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6, N.34	dalloz	주간
78	Law and human behavior Vol.40 No.5	Kluwer	격월간
79	Le Droit Ouvrier N.819(2016)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80	Lloyd's law reports 2016, Part.8	Lloyd's of London	연10회
81	Monatsschrift für Deutsches RechtJahrg. 70 Hft.19	Otto Schmidt	반월간
82	Monatsschrift für Deutsches RechtJahrg. 70 Hft.20	Otto Schmidt	반월간
8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6, Heft.40	C. H. Beck	주간
8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6, Heft.41+Spezial.20	C. H. Beck	주간
8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6, Heft.42	C. H. Beck	주간
86	Neue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NZA) Jahrg. 33 H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7	Neue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NZA) Jahrg. 33 Hft.19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8	Neue Zeitschrift für Strafrecht Jahrgang. 36 Heft.10	C. H. Beck	월간
89	Neue Zeitschrift für Verwaltungsrecht Jahrgang.35 Heft.19	C. H. Beck	월간
90	Neue Zeitschrift für Verwaltungsrecht Jahrgang.35 Heft.20	C. H. Beck	월간
91	NJ Neue Justiz Jahrg.70 Nr.10	Nomos	월간
92	NZG(Neue Zeitschrift fü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9 Heft.28	Verlag C. H. Beck OHG	순간
93	NZG (NeueZeitschrift fü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9 Heft.29	Verlag C. H. Beck OHG	순간
94	NZG(Neue Zeitschrift fü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9 Heft.30	Verlag C. H. Beck OHG	순간
95	Public Law 2016, October	Sweet & Maxwell	계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 기
96	Rechtspfleger Studienhefte Jahrgang.40 Heft.5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cking GmbH	월간
97	Recueil Dalloz 2016, N.32	Dalloz	주간
98	Recueil Dalloz 2016, N.33	Dalloz	주간
99	Recueil Dalloz 2016, N.34	Dalloz	주간
100	Recueil Dalloz 2016, N.35	Dalloz	주간
101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2016, N.2(4-6)	dalloz	계간
102	Revue du droit public 2016, Nr.5	L.G.D.J	격월간
103	Revue franc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6, No.4	Dalloz	격월간
104	Revue Gene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2016, N.3	Editions A. Pedone	계간
105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 N.3(2016, 7-9)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	계간
106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49(2016)	RIDA	계간
107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2016, No.3	Dalloz	계간
108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ommercial et de droit économique 2016, Nr.3	Dalloz	계간
109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een 2016, 8Nr.3	EDITIONS DALLOZ	계간
110	RSC(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nal Compare) 7/9 2016(N.3)	EDITIONS DALLOZ	계간
111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6 Heft.11	Luchterhand	월간
112	The Economist 2016.10.15.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3	The Economist 2016.10.22.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4	The Economist 2016.10.29.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5	The Economist 2016.10.08.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6	The law quarterly review Vol.132 (2016, October)	Sweet & Maxwell	계간
117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9 No.3	NLP IP Company	주간
118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9 No.4	NLP IP Company	주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 기
11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9 No.5	NLP IP Company	주간
120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9 No.6	NLP IP Company	주간
121	Time 2016년 10월 24일	Time Asia	주간
122	Time 2016년 10월 31일	Time Asia	주간
123	Time 2016년 11월 07일	Time Asia	주간
124	Time 2016년 11월 14일	Time Asia	주간
125	Verfassung und Recht in Ubersee(VRu) Jahrg. 49 Hft.3	Nomos	계간
126	Versicherungsrecht Jahrg.67 Hft.19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27	Versicherungsrecht Jahrg.67 Hft.20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28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0 Nr.39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29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0 Nr.40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30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0 Nr.41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31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0 Nr.42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32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0 Nr.43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33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 66 Hft.10	Fachverlag der VHB GmbH	월간
134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 und SozialrechtJahrg.51 Hft.5	Manz	격월간
135	Zeitschrift für ausländisches öffentliches Recht und Völkrecht Jahrgang.76 Heft.3	Kohlhammer	계간
136	Zeitschrift für Gesetzgebung Jahrg.31 Hft.3	C.F.Muller	계간
137	Zeitschrift für Schweizerisches Recht Bd. 135 I Hft.4	Helbing & Lichtenhahn	격월간
138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ahrg.37 Hft.39	RWS	주간
139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ahrg.37 Hft.40	RWS	주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 기
140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ahrg. 37 Hft. 41+Ewir 19	RWS	주간
141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ahrg. 37 Hft. 42	RWS	주간
142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ahrg. 37 Hft. 43+Ewir 20	RWS	주간
143	Zeup(Zeitschrift für Europäisches Privatrecht) 4/2016	Verlag C. H. Beck OHG	계간

